

세미나자료 2007-04

육아정책개발센터 창립 2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2th
ANNIVERSAR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일시_2007. 12. 3(월) 장소_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_EBS, UNICEF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 및 집필 : 이 옥(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서문희(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유희정(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장명림(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이미화(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은설(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신나리(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김은영(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정원(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윤진(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자료 정리 : 김홍희(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박수연(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창립 2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

14:10~14:20 축사 **박동은** UNICEF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사회 **임재택** 부산대학교 교수

14:20~15:20 주제발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15:20~16:30 지정토론

김재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선재희 KBS 문화복지팀 기자

이 영 연세대학교 교수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가나다순)

16:30~17:20 종합토론

17:20~18:30 리셉션

〈제 목 차 례〉

I.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1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3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3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3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4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4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5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5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6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6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6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6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7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7
II.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9
1. 부모	11
가. 조사 대상	11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12
다. 조사 결과	12
라. 요약	26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27
가. 조사 대상	27
나. 조사 내용	31
다. 조사 결과	31
라. 요약	66

Ⅲ.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69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73
가. 배경	73
나. 현황	75
다. 세부 과제	81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84
가. 배경	84
나. 현황	85
다. 세부 과제	90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93
가. 배경	93
나. 현황	94
다. 세부 과제	99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102
가. 배경	102
나. 현황	104
다. 세부 과제	105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108
가. 배경	108
나. 현황	111
다. 세부 과제	115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121
가. 배경	121
나. 현황	122
다. 세부 과제	124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127
가. 배경	127
나. 현황	128
다. 세부 과제	131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134
가. 배경	134
나. 현황	135
다. 쟁점	136
라. 세부 과제	136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139
가. 배경	139
나. 현황	140
다. 쟁점	145
라. 세부 과제	146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48
가. 배경	148
나. 현황	150
다. 세부 과제	153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56
가. 배경	156
나. 현황	158
다. 세부 과제	163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65
가. 배경	165
나. 현황	166
다. 세부 과제	168

IV. 토론자 원고

173

1. 김재남(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176
----------------------------	-----

2. 김형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82
3.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85
4. 선재희(KBS 문화복지팀 기자)	188
5. 이 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92
6.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96
7. 최창한(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204
부 록	208

〈표 차례〉

〈표 II-1-1〉 시설유형 및 거주지역별 분포	11
〈표 II-1-2〉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13
〈표 II-1-3〉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14
〈표 II-1-4〉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	15
〈표 II-1-5〉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16
〈표 II-1-6〉 육아시설이용 만족 이유	17
〈표 II-1-7〉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18
〈표 II-1-8〉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19
〈표 II-1-9〉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20
〈표 II-1-1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21
〈표 II-1-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21
〈표 II-1-12〉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	22

〈표 II-1-13〉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	23
〈표 II-1-14〉	자녀 출산·양육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 ……	24
〈표 II-1-15〉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	25
〈표 II-1-16〉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	25
〈표 II-2-1〉	의견조사 대상자 ……	27
〈표 II-2-2〉	설문에 참여한 학회 회원 ……	28
〈표 II-2-3〉	지역별 응답자 수 ……	29
〈표 II-2-4〉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	30
〈표 II-2-5〉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	31
〈표 II-2-6〉	계속 추진이 필요한 현행 육아지원정책 ……	32
〈표 II-2-7〉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	46
〈표 III-1-1〉	나라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	75
〈표 III-1-2〉	유형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	77
〈표 III-1-3〉	원인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	77
〈표 III-1-4〉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사항(2006년) ……	79
〈표 III-1-5〉	유치원 시범평가 편람 안전교육내용(2007년) ……	79
〈표 III-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전영역의 지표 내용 ……	80
〈표 III-2-1〉	장애영유아 배치 현황(2006년) ……	86
〈표 III-2-2〉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현황(2006년) ……	86
〈표 III-2-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2006년) ……	86
〈표 III-2-4〉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 기준(2007년) ……	88
〈표 III-2-5〉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2007년) ……	89
〈표 III-2-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유무(2007년) ……	89
〈표 III-3-1〉	지역구분에 따른 유치원설치 및 취원아동 현황(2006년) ……	94
〈표 III-3-2〉	지역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비율 ……	95
〈표 III-3-3〉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95
〈표 III-3-4〉	농어촌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	96
〈표 III-3-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	97
〈표 III-3-6〉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2006년) ……	97
〈표 III-3-7〉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	98
〈표 III-3-8〉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	99

〈표 III-4-1〉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2004년)	103
〈표 III-4-2〉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2005년)	103
〈표 III-4-3〉	영아 모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시간제 보육 필요성	104
〈표 III-4-4〉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유형	105
〈표 III-4-5〉	아이돌보미 이용 유형	105
〈표 III-5-1〉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2~2006년)	110
〈표 III-5-2〉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	110
〈표 III-5-3〉	육아휴직 사용현황(2001~2007년)	111
〈표 III-5-4〉	분만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추이	112
〈표 III-5-5〉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2006년)	113
〈표 III-5-6〉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률(2006년)	114
〈표 III-5-7〉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년)	114
〈표 III-5-8〉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07년)	115
〈표 III-6-1〉	연도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123
〈표 III-6-2〉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	123
〈표 III-7-1〉	유치원 설치 현황(2006년)	128
〈표 III-7-2〉	유치원 공공성 지표(2006년)	129
〈표 III-7-3〉	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년)	130
〈표 III-7-4〉	보육시설 공공성 지표(2006년)	131
〈표 III-7-5〉	법인화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132
〈표 III-7-6〉	보육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장의 의견	132
〈표 III-8-1〉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의 보육료 운영 방향	135
〈표 III-9-1〉	보육료 지원 아동수(2006년)	141
〈표 III-9-2〉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2006년)	142
〈표 III-9-3〉	소득수준별 ·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142
〈표 III-9-4〉	유아 민간개인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2007. 9)	143
〈표 III-9-5〉	평택시 보육료 상한액: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전후(2006, 2007년)	143
〈표 III-9-6〉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지원사업 세부예산	144
〈표 III-9-7〉	2007년도 교육인적지원부 유아교육지원 세부 예산	145
〈표 III-10-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150
〈표 III-10-2〉	유치원평가 대상기관 수(2008~2010년)	151

〈표 III-10-3〉	평가인증 참여신청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7년)	152
〈표 III-10-4〉	전체시설 대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현황(2005~2007년)	152
〈표 III-11-1〉	유치원 교사 근무 시간(2005년)	159
〈표 III-11-2〉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2006년)	159
〈표 III-11-3〉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159
〈표 III-11-4〉	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2005년)	160
〈표 III-11-5〉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1일 기준)(2007년)	160
〈표 III-11-6〉	보육시설 운영시간(2005년)	161
〈표 III-11-7〉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162
〈표 III-11-8〉	보육교사의 실제 휴가일수(2007년)	162
〈표 III-11-9〉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준수 여부(2007년)	163
〈표 III-12-1〉	유치원 교사의 업무 시간 평균(2005년)	166
〈표 III-12-2〉	보육교사 담당 주업무(2007년)	167
〈표 III-12-3〉	보육교사 업무량 인식(2007년)	167
〈표 III-12-4〉	대체교사 활용현황(전국, 2007년)	168
〈표 III-12-5〉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169

〈그림 차례〉

[그림 III-1-1]	연령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76
[그림 III-2-1]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있는 비율	90
[그림 III-5-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각 년도)	109

I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I.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정책적,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차기정부 역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정책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 국정과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보다 진전되고 효율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함.
- 육아정책은 미래인적 자원의 건강한 육성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그리고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정책으로서 범정부적 주목을 받아왔음. 향후,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꾀하는 시급한 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중장기적 인적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차기정부 육아정책 시행 5년간 보다 선진적 육아정책과제의 수행으로 0~2세 영아의 40% 정도가 서비스 수준이 관리되는 육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3~5세 유아의 90%가 공공성이 확보된 육아시설에서 질적인 교육과 보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육아 선진국 진입을 기대함.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 지난 5년간 정부는 육아지원정책 추진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육아시설 이용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전국규모의 기초조사를 실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육아정책방향과 다음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차기정부 역시 이 3대 핵심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그 성과의 도출을 기대함.
 -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의한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서비스 수준의 질적 수준 제고
- 육아시설 이용비용의 정부부담 수준 확대로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집중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수준, 이용자의 비용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임.
- 차기정부의 육아정책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수준, 기타 정부관여의 수준에 이르는 제 쟁점에 대해, 보다 진보적 입장의 정책선택과 합의를 이끌어 육아정책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함.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 육아지원의 외부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사회적 절박성 때문에 대다수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정책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의 선별적 지원정책(소득별 차등교육비, 차등보육료)을 기초로, 보편적 지원정책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보편적 지원프로그램은 추진되지 못함.
 - 현재 보편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의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을 뿐,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의 추진도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육아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아동, 즉 이용자별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 운영비 지원 등, 시설 지원이 더욱 긴급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수요자(아동) 지원방식과 공급자(시설) 지원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중장기적 육아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요구됨.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 지난 1980~90년대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의존 형 정책추진 결과, 전체 육아시설 이용 영유아 가운데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각각 11%와 22% 수준임.
- 육아지원의 보편성과 공공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 육아지원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 육아시설 확충이 급선무라는 주장과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립·민간 육아시설의 관리와 육성 정책이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 육아시설, 특히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이용가격 규제정책의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가격자율화 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부처간, 전문학자간, 현장종사자간, 심지어 육아시설 이용자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됨.
 - 육아서비스 이용가격,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가격자율화는 육아지원의 공공성 제고정책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가격자율화는 육아서비스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는 육아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므로 가격자율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자율화 정책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 가격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음. 유치원의 가격자율화는 민간보육시설 가격규제 영향으로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기보다는 유치원별 유사한 이용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자율화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가격자율화여부에 대해 차기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일관성 있게 육아 지원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그 성과(접근성 확대, 서비스 질의 제고, 이용료 부담의 경감과 이용가격의 안정화 등)를 도출할 것을 기대함.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 정부의 육아서비스 관리감독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이해당사자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자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정부개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의 최소화와 가격자율화 등을 병행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하여 육아서비스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됨.
 - 육아재정 확대에 따라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행정업무 과잉으로 인한 행·재정적 폐해의 감소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 차기정부는 육아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관여 대상과 관여 수준을 명확히 결정하여 정부 관여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여 대상과 수준을 5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을 기대함.

3. 육아서비스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가. 육아서비스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 국가의 육아서비스 재원은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수긍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인해 세부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과제 또는 핵심과제 선택이 불가피함.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급격한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 수십 년간 요보호 아동 대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행된 육아서비스 정책의 관행으로 인해 진보적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 일반의 동의가 여전히 어려움.

- 사회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회통합에 접근할 수 있는 육아지원 우선과제의 선택과 이행이 긴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오랫동안 국공립과 사립/민간 부분의 비형평적 요소와 지원 수준의 차별적 요소의 제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용이하지 않음
 - 이해당사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육아지원 대상과 지원방식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들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 수많은 육아지원 정책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하나, 차기정부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 즉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우선과제로 선택하여야 함.
- 육아지원이 더욱 절실한 계층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우선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유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우선과제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 지난 2년간 육아정책 연구과제 수행 결과로 육아정책개발센터에 축적된 데이터와 현행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공동 토의과정을 통해 검토하면서, 우선적이며 핵심적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육아정책과제들을 일차 선정함.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기초하여, 개방형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육아정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정책 수요자, 즉 육아서비스 이용자인 부모와 서비스 공급자인 유치원 원장과 시설장, 교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정책과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함.
 - 특히 육아서비스 수요자인 부모와 그 외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을 구분하여 구성함.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에 참고하였음.

- 일차 선정된 육아정책과제들을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재검토 하고,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로 보완과정을 거쳐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특히 현 정부의 육아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 과제와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진 토의 와 의견조사를 통해 검토하였음.
 - 현란한 육아정책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간 데이터에 기초하여,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지원의 합리성 제고 원칙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원고에서 제안하는 육아정책과제의 범위는 학령전 아동,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정책과제에 한함. 육아정책과제 중에서 특히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관련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제안함.

Ⅱ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II.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1. 부모

가. 조사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100명: 유치원 이용 부모 50명, 보육시설 이용 부모 50명

〈표 II-1-1〉 시설유형 및 거주지역별 분포

	빈도	비율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시설유형		
공립유치원	25	25.0
사립유치원	25	25.0
국공립보육시설	5	5.0
법인보육시설	2	2.0
직장보육시설	2	2.0
민간개인보육시설	24	24.0
가정보육시설	5	5.0
미상(보육시설)	12	12.0
지역		
서울	28	28.0
부산	4	4.0
대전	2	2.0
대구	6	6.0
광주	2	2.0
인천	2	2.0
울산	4	4.0
경기	11	11.0
충북	2	2.0
충남	11	11.0
경북	2	2.0
경남	4	4.0
전남	4	4.0
제주	2	2.0
미상	16	16.0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1) 조사 내용

-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함.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사항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이유
 -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과 그 이유
 -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정책과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자녀 출산·양육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 향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2) 조사 절차

- 전국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지역 및 기관 유형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할 당하여 유치원 25개원, 보육시설 25개소 선정하고 50개 시설에 두 명씩의 부모 조사를 의뢰함.
- 부모 조사는 전화로 각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의뢰하여 질문지를 우편, e-mail, FAX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배송하고 회신 받도록 함.

다. 조사 결과

1)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

- 부모들은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시 우선적으로 고

려한 사항에 대해 <표 II-1-2>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중 중요하게 고려한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시, 집과의 거리, 교육·보육 프로그램, 실내외 환경, 종사자 요인 등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음.

<표 II-1-2>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28(28.0)	8(8.0)
차량운행	1(1.0)	1(1.0)
운영시간	1(1.0)	1(1.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4(4.0)	5(5.0)
안전관리	4(4.0)	4(4.0)
위생관리	3(3.0)	3(3.0)
실내·외 환경	15(15.0)	13(13.0)
주변환경	1(1.0)	3(3.0)
교재·교구	2(2.0)	1(1.0)
급·간식	4(4.0)	5(5.0)
교육·보육 프로그램	23(23)	25(25.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3(13.0)	28(28.0)
기타	0(0.0)	2(2.0)
합계	99	99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자 간에 기관 유형별로도 이용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에는 별 차이가 없음. 다만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원장 및 교사의 전문성이 좀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3〉 이용 기관 선택시 우선적 고려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15(30.0)	4(8.0)	13(26.5)	4(8.0)
차량운행	0(0.0)	1(2.0)	1(2.0)	0(0.0)
운영시간	0(0.0)	0(0.0)	1(2.0)	1(2.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3(6.0)	3(6.0)	1(2.0)	2(4.0)
안전관리	0(0.0)	2(4.0)	4(8.2)	2(4.0)
위생관리	0(0.0)	0(0.0)	3(6.1)	3(6.0)
실내·외 환경	7(14.0)	9(18.0)	8(16.3)	4(8.0)
주변환경	0(0.0)	0(0.0)	1(2.0)	3(6.0)
교재·교구	1(2.0)	1(2.0)	1(2.0)	0(0.0)
급·간식	2(4.0)	2(4.0)	2(4.1)	3(6.0)
교육·보육 프로그램	13(26.0)	13(26.0)	10(20.4)	12(24.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9(18.0)	14(28.0)	4(8.2)	14(28.0)
기타	0(0.0)	1(2.0)	0(0.0)	1(2.0)
합계	50	50	49	49

2) 이용하는 유치원·보육시설의 만족사항

- 부모들이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표 II-1-4>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그중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사항은 교육·보육 프로그램, 원장 및 교사 요인, 실내외 환경·집과의 거리 요인 등임.
 - 만족사항은 대체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사항과 관련이 있음.

〈표 II-1-4〉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12(12.0)	4(4.0)
차량운행	2(2.0)	1(1.0)
운영시간	2(2.0)	4(4.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5(5.0)	4(4.0)
안전관리	2(2.0)	6(6.0)
위생관리	3(3.0)	4(4.0)
실내·외 환경	12(12.0)	11(11.0)
주변환경	0(0.0)	3(3.0)
교재·교구	2(2.0)	3(3.0)
급·간식	9(9.0)	8(8.0)
교육·보육 프로그램	30(30.0)	22(22.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21(21.0)	30(30.0)
계	100	99

- 유치원 이용 부모가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원장 및 교사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보육시설 이용 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5〉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만족하는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5(10.0)	1(2.0)	7(14.0)	3(6.0)
차량운행	0(0.0)	0(0.0)	2(4.0)	1(2.0)
운영시간	2(4.0)	0(0.0)	0(0.0)	4(8.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5(10.0)	4(8.0)	0(0.0)	0(0.0)
안전관리	0(0.0)	3(6.0)	2(4.0)	3(6.0)
위생관리	0(0.0)	1(2.0)	3(6.0)	3(6.0)
실내·외 환경	2(4.0)	7(14.0)	10(20.0)	4(8.0)
주변환경	0(0.0)	1(2.0)	0(0.0)	2(4.0)
교재·교구	0(0.0)	2(4.0)	2(4.0)	1(2.0)
급·간식	3(6.0)	3(6.0)	6(12.0)	5(10.0)
교육·보육프로그램	19(38.0)	10(20.0)	11(22.0)	12(24.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4(28.0)	18(36.0)	7(14.0)	12(24.0)
계	50	50	50	50

□ 부모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의 응답은 <표 II-1-6>에 나타난 바와 같음.

- 현장학습, 영어·미술·수영 등 특기수업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음.
-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가 좋거나(아이가 적응을 잘하고 선생님과 관계 좋음) 교사의 전문성이 높다고 느낄 때, 급·간식 내용이 좋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부모들은 자녀들이 먹거리 등 기본적인 환경이 양호한 상태에서 기관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 그 기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특히 원장·시설장 및 교사에게는 주로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에 기대를 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용 기관 유형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는 특히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남.

〈표 II-1-6〉 육아시설이용 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유형별		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아이들이 적응 잘함, 선생님과의 관계 원만	9(23.0)	6(16.2)	15(20.0)
인성교육이 잘됨	2(5.1)	4(10.8)	6(8.0)
교사의 전문성이 높음	11(28.2)	3(8.1)	14(18.0)
시설이 좋음(깨끗함, 밝음)	0(0.0)	3(8.1)	3(4.0)
프로그램 구성이 좋음(현장학습, 영어·미술 등 특기수업이 좋음)	9(23.0)	7(18.9)	16(21.0)
급·간식이 좋음(좋은 재료 이용, 유기농 식단 등)	3(7.7)	6(16.2)	9(12.0)
안전한 환경	1(2.6)	2(5.4)	3(4.0)
운영시간이 좋음(종일반 운영, 연장 보육 등)	0(0.0)	1(2.7)	1(1.0)
집과 거리가 가까움	3(7.7)	5(13.5)	8(11.0)
주변환경 쾌적	1(2.6)	0(0.0)	1(1.0)
계	39	37	76

3)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해 <표 II-1-7>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1순위, 2순위를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

한 부분은 차량운행,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실내·외 환경, 보육·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답하였으며, 실내·외 환경,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급·간식 등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또한, 실내·외 환경은 부모들이 기관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항과도 중복되고 있음.

부모들은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표 11-1-7〉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5(5.0)	3(4.0)
차량운행	19(20.0)	4(5.0)
운영시간	9(10.0)	8(10.0)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11(12.0)	11(13.0)
안전관리	6(6.0)	8(10.0)
위생관리	5(5.0)	4(5.0)
실내·외 환경	10(11.0)	13(15.0)
주변환경	8(9.0)	6(7.0)
교재·교구	7(7.0)	6(7.0)
급·간식	4(4.0)	10(12.0)
교육·보육 프로그램	9(10.0)	7(8.0)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1((1.0)	3(4.0)
계	94	84

〈표 II-1-8〉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 유형별		빈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시설미비,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됨	5(13.2)	2(5.4)	7(9.0)
현장학습 등 미비	2(5.3)	6(16.2)	8(11.0)
안전시설 미비	4(10.5)	1(2.7)	5(7.0)
차량 운행이 불편함(운행코스 및 시간 조정 요망)	3(7.9)	7(18.9)	10(13.0)
운영시간이 불편함(종일반, 반일반, 토요일 운영 등 운영시간 조정 필요)	6(15.8)	4(10.8)	10(13.0)
정부의 교육비·보육료 지원 필요(무상교육, 보육료 감면)	4(10.4)	6(16.2)	10(13.0)
주변환경이 좋지 않음(유해업소 밀집, 공자장·도로변 위치 등)	7(18.4)	4(10.8)	11(15.0)
학부모의 참여와 교류 미비(프로그램 선정 등 참여 요망)	0(0.0)	1(2.7)	1(1.0)
위생관리 미흡	3(7.9)	2(5.4)	5(7.0)
급·간식 관리 미흡	2(5.3)	1(2.7)	3(4.0)
집과의 거리가 멀	2(5.3)	3(8.1)	5(7.0)
합계	38	37	75

□ 이용기관 유형별 개선을 요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운영시간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와 안전시설 미비, 좋지 않은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남,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차량운행의 불편함과 현장학습 등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보완,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표 II-1-9〉 이용 기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집과의 거리	2(4.3)	0(0.0)	3(6.4)	3(7.1)
차량운행	13(27.7)	1(2.4)	6(12.8)	3(7.1)
운영시간	3(6.4)	4(9.5)	6(12.8)	4(9.5)
교육비·보육료 등 비용	6(12.8)	3(7.1)	5(10.6)	8(19.0)
안전관리	3(6.4)	5(11.9)	3(6.4)	3(7.1)
위생관리	3(6.4)	4(9.5)	2(4.3)	0(0.0)
실내·외 환경	7(14.9)	8(19.0)	3(6.4)	5(11.9)
주변환경	4(8.5)	3(7.1)	4(8.5)	3(7.1)
교재·교구	5(10.6)	3(7.1)	2(4.3)	3(7.1)
급·간식	1(2.1)	6(14.3)	3(6.4)	4(9.5)
교육·보육 프로그램	0(0.0)	4(9.5)	9(19.1)	3(7.1)
원장(시설장) 및 교사(전문성, 인성 등)	0(0.0)	1(2.4)	1(2.1)	2(4.8)
기타	0(0.0)	0(0.0)	0(0.0)	1(2.4)
합계	47	42	47	42

4)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1-10>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현재 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 인증, 관리의 순이었음. 그 외에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유치원 종일제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 지원의 혜택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외 정부 정책을 통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평가함.

〈표 II-1-1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54(55.0)	11(12.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9(9.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6(6.0)	28(29.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4(4.0)	6(6.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0.0)	5(5.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10(10.0)	14(15.0)
유치원 종일제 확대	8(8.0)	15(16.0)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3(3.0)	7(7.0)
계	98	95

〈표 II-1-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도움이 된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6(12.5)	28(58.3)	5(10.6)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0(20.0)	8(16.7)	3(6.3)	1(2.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5(10.0)	13(27.1)	1(2.1)	15(31.9)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4.0)	2(4.2)	2(4.2)	4(8.5)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0.0)	4(8.3)	0(0.0)	1(2.1)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2.0)	2(4.2)	8(16.7)	12(25.5)
유치원 종일제 확대	5(10.0)	12(25.0)	3(6.3)	3(6.4)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0(0.0)	1(2.1)	3(6.3)	6(12.8)
계	50	48	48	47

5)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1-12>의 항목을 보기로 제시하고,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함.
- 부모들은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들었음.

<표 II-1-12>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46(46.0)	8(8.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24(24.0)	21(21.0)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9(9.0)	26(27.0)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9(9.0)	13(13.0)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1(1.0)	6(6.0)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2(2.0)	7(7.0)
유치원 종일제 확대	5(5.0)	9(9.0)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3(3.0)	6(6.0)
기타	1(1.0)	2(2.0)
계	100	98

- 이용 기관 별 큰 차이는 없으나,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비용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게 나타나며, 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

〈표 II-1-13〉 향후 가장 강화되어야 할 유아교육·보육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교육비·보육료 지원	26(52.0)	2(4.0)	20(40.0)	6(12.5)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5(30.0)	8(16.0)	9(18.0)	13(27.1)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4(8.0)	17(34.0)	5(10.0)	9(18.8)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2(4.0)	9(18.0)	7(14.0)	4(8.3)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0(0.0)	3(6.0)	1(2.0)	3(6.3)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0(0.0)	3(6.0)	2(4.0)	4(8.3)
유치원 종일제 확대	2(4.0)	5(10.0)	3(6.0)	4(8.3)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1(2.0)	1(2.0)	2(4.0)	5(10.4)
기타	0(0.0)	2(4.0)	1(2.0)	0(0.0)
계	50	50	50	48

6) 자녀 출산·양육시 애로사항

- 부모들에게 <표 II-1-14>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답하도록 하였음.
-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양육해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음, 비용 부담, 주변에 자녀를 맡길 기관 부족 등으로 응답함.
- 유치원 이용 부모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 부모가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

〈표 II-1-14〉 자녀 출산·양육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이용 기관 유형별		빈도(비율)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음	21(42.0)	18(36.7)	39(39.0)
주변에 자녀를 맡길 믿을만한 기관이 없어 힘들었음	9(18.0)	8(16.3)	17(17.0)
자녀 출산·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웠음	8(16.0)	14(28.6)	23(23.0)
직장에서 야근 등 초과근무가 잦아 힘들었음	4(8.0)	5(10.2)	9(9.0)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어려워 힘들었음	2(4.0)	3(6.1)	5(5.0)
육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힘들었음	4(8.0)	1(2.0)	5(5.0)
기타	1(2.0)	0(0.0)	1(1.0)
계	50	49	99

7) 자녀 양육지원 관련 필요 정책

- 부모들에게 <표 II-1-15>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보기로,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1순위, 2순위로 답하도록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부모들은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응답함. 그 밖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II-1-15〉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40(40.0)	15(15.0)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13(13.0)	15(15.0)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8(8.0)	4(4.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14(14.0)	14(14.0)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0.0)	3(3.0)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11(11.0)	17(17.0)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10(10.0)	16(16.0)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3(3.0)	13(13.0)
기타	1(1.0)	1(1.0)
계	100	98

- 부모들은 양육 지원 정책 요구사항 중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II-1-16〉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이용 기관 유형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이용		보육시설 이용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20(40.0)	7(14.3)	20(40.0)	8(16.3)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7(14.0)	9(18.4)	6(12.0)	6(12.2)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3(6.0)	4(8.2)	5(10.0)	0(0.0)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7(14.0)	6(12.2)	7(14.0)	8(16.3)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0(0.0)	0(0.0)	0(0.0)	3(6.1)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5(10.0)	10(20.4)	6(12.0)	7(14.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5(10.0)	6(12.2)	5(10.0)	10(2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2(4.0)	7(14.3)	1(2.0)	6(12.2)
기타	1(2.0)	0(0.0)	0(0.0)	1(2.0)
계	50	49	50	49

라. 요약

- 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선택 시,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실내외 환경도 중시하여 고려함.
-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들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원장 및 교사, 실내외 환경, 집과의 거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음.
-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운영시간, 차량운행 방식이나 실내·외 환경, 비용 등을 지적하는 부모가 많았음. 차량운행의 불편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영유아의 교육·보육 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 개선의 요구가 높음.
 - 기관 유형별로 유치원은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보육시설의 경우 교육·보육 프로그램과 차량운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은 교육비·보육료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라고 응답함.
 - 부모들은 대체로 비용지원의 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정부 정책이 질 높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함.
- 다수의 부모들은 향후 강화되어야 할 정책으로서,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을 들었음.
-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양육하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주변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줄 인력이나 기관의 부족과 비용 부담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정책으로 육아시설 이용 비용 지원과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등 비용 지원 정책과 육아시설 확충 정책을 들었음.
-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을 크게 나타냄.

- 부모들이 자녀가 이용할 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과 만족사항, 개선요구 사항, 향후 필요로 하는 정책 등 부모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들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
 - 부모들은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보호, 교육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 개선의 요구도 높음.
 - 향후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유치원 등 질 높은 기관이 확충되고 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가.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자 규모 및 선정과정

- 조사 대상자는 전문가 51명, 공무원 62명, 유치원 원장·보육시설장 93명, 교사 113명으로 총 319명임.

〈표 II-2-1〉 의견조사 대상자

단위: 명

구분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유아교육	28	27	49	63	167
보육	23	35	44	50	152
계	51	62	93	113	319

가) 전문가

- 15개 관련 학회에 의뢰하여 추천을 받아 총 100명에게 설문지를 송부했고 이 중 51명의 응답지를 회수함.

〈표 II-2-2〉 설문에 참여한 학회 회원

단위: 명

	학 회 명	응답자 수
유아교육 관련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	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5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5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3
	한국유아교육학회	5
	한국육아지원학회	4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0
	계	28
보육 관련학회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3
	한국보육정책학회	1
	한국보육지원학회	5
	한국보육학회	2
	한국아동권리학회	3
	한국아동학회	7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
계	23	
전체		51

나) 공무원

-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의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자 각각 1명씩을 지역규모나 지역안배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임의표집함.
 - 유아교육이나 보육 담당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 현재 담당부서가 유아교육이나 보육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이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해서 육아정책을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표시) 추가
- 총 163명(유 81, 보 82)에게 설문지를 송부, 68명(유 27, 보 35 기타 6)이 회신함.

: 담당부서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설문조사지 기타 6명은 제외하고, 총 62명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II-2-3〉 지역별 응답자 수

단위: 명

지역	유아교육		보육		계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서울	1	7	1	7	16
부산	1	5	1	5	12
대구	1	3	1	3	8
인천	1	5	2	5	13
광주	1	2	1	2	6
대전	1	2	1	2	6
울산	1	2	1	2	6
경기	1	6	1	6	14
강원	1	6	1	6	14
충북	1	5	1	5	12
충남	1	4	1	4	10
전북	1	4	1	4	10
전남	1	4	1	4	10
경북	1	4	1	4	10
경남	1	4	1	4	10
제주	1	2	1	2	6
계					163

다) 유치원 원장 · 보육시설장

(1) 유치원 원장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 연합회에 의뢰
- 사립유치원 교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표집으로 49명을 조사함.

(2) 보육시설 시설장

- 국공립 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분과에 의뢰함.
- 법인,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은 한국보육시설총연합회에 의뢰하고 기타 임의 표집을 통해서 전체 44명의 의견을 조사함.

〈표 II-2-4〉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1	49
	사립	16	
	미상	2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44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16	
	미상	3	
계			93

라) 교사

(1) 유치원 교사

-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 표집을 의뢰, 사립유치원 교사는 개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의뢰하여 총 62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2)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노동조합에 표집을 의뢰
- 부족분은 시·도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시설 명단을 활용하여 표집, 총 50명의 교사 의견을 조사함.

〈표 II-2-5〉 유치원·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응답자 수

단위: 명

기관유형	설립유형	응답자 수	계
유치원	국공립	33	62
	사립	29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25	50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25	
계			112

나. 조사 내용

현재 시행중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 시행중인 정책 가운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 개선이 필요한 정책, 그리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다. 조사 결과

1) 계속 추진되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중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표 II-2-6>과 같이 요약됨.

〈표 11-2-6〉 계속 추진이 필요한 현행 육아지원정책

단위: %

정책 내용	유아교육(n=167)	보육(n=152)
	계속 추진필요	계속 추진필요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71.3	11.2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 시설)	22.2	59.2
·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55.7	15.1
· 사립유치원·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	28.7	26.3
· 농어촌 공립유치원차량지원/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46.7	23.7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10.2	43.4
·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지원	26.3	9.2
·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11.4	34.9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 영아 기본보조금	14.4	33.6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17.4	31.6
· 만5세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51.5	41.4
· 장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26.3	40.1
·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28.1	32.9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8	27.0
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16.8	31.6
·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28.1	23.7
유치원·보육시설 질 제고 정책		
· 기관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36.5	40.1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40.1	36.8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7.8	7.2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6.6	6.6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응답수가 많은 경우 별로 5개만 제시함)
 - 맞벌이 부부의 안정된 직장생활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
 - 유치원의 에듀케어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함.
 - 유아교육기관의 효율적 활용
 - 방과 후 사교육비 절감
 - 취원을 제고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야간, 휴일, 방학 중 근무하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사에게 특별 수당 지급
 - 종일제 교사 지원 확대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운영 경비 지원(실질적 운영비 지원)
 - 공립유치원종일제 교사를 유아교육전공자로 전담인력 배치
 - 실질적인 저소득층 원아 지원

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사의 질 확보와 양질의 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을 줄일 수 있어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여 할 수 있음.
 - 교사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
 -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에서 효과
 - 윤택한 교육적 환경 제공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인건비 상향조정 필요.
- 지급방식의 투명성 제고.
-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의 상향조정, 초등학교 교사대비 조정필요 애로
-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수당 필요
- 직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으로 확대

다)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 교사의 책무성 제고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이로 인한 교직에 대한 안정감 부여
 - 유치원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 공립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
 - 철저한 담임 학급에 대한 책임감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교통비, 급식비 등의 제수당 확대
 - 지원 금액 규모면에서 확대 필요
 - 대도시까지 확대 시행 필요. 교수학습개발비도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되도록 함.
 - 법인체만 지원하는 것이 좋음.
 - 지속적인 지원 보장

라) 사립유치원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종류와 수의 확보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짐.
 -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운영에 큰 도움이 됨.
 - 학부모의 만족
 - 교재·교구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계기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교재교구비 또한 인건비 확충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지원했을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함.
 - 조달품만 구입하도록 유통체계 단일화
 - 교재교구 구입 및 사용내역의 합리적 방법 모색 - 관리, 감독 필요
 -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 강화 선행
 - 비용이 아닌 교재교구를 직접 지원

마) 차량운영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인구 희소지역의 영유아 및 가정에 좋은 기회가 됨.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벽지의 경우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기 어려움.
 - 취원율의 확대로 이어져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
 - 차량지원으로 집에서 방치되는 원아가 줄어들.
 -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고 유아교육기회 확대, 현장학습의 활성화

- 등원 및 귀가 안전확보로 학부모의 안심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유치원 종일제 유아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필요
-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차량지원확대
-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여야 함
- 유가(油價)를 고려한 지원

바)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기관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구축 가능
- 행정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 보육현장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정확한 시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서류 직접제출 건수가 줄고, 행정비용 감소
- 보육업무 담당자와 보육시설 간의 업무체계 간소화를 통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보조금 신청, 보육교사, 아동현황 등 파악용이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보육행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즉 유아교육의 모든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일괄 행정으로 처리했으면 함.

사)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조교사대신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 유아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 도모 및 유아개별화 교육지원

- 정교사가 온 종일 가르치고 돌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반드시 필요함.
- 체계적인 훈련이 따른다면 인적 자원의 활용도 높일 수 있음
- 위생적인 환경 유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학급보조자원봉사자에게 봉사비 지급(중고령 여성 자원 봉사자 활용 참고)
-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임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선정에 애로가 있음.
- 보육시설에도 학급보조 자원봉사자가 필요함.
-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아)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기관의 경우, 운영을 시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필요, 특히 저소득층 자녀, 특정 지역 유아 보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실제의 운영지침과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유아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지원 효과
- 다양한 형태의 보육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에 도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하여 아동당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일반보육보다 더 철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필요
- 영유아의 안전 고려
- 꼭 필요한 가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확인절차 필요

- 비정규인력채용 제안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가) 영아 기본보조금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차후에 만3~4세까지 확장되어야 보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것임.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안심하고 기관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짐.
 - 교육기회의 확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재정을 산발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교원인건비확보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급 기준 강화
 -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을 확인하기 어려움.

나)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에 기여
 - 저소득층 아동의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부모 부담 경감
 - 소득 재분배 효과
 - 5세 이하의 모든 보육 아동이 무상 보육이 될 때 까지 지원 정책 계속 되어야 함.

- 소득에 따른 지원이 바람직함.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차등보육료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무상보육 실시

- 만5세아 외에는 보육료 전액지원계층을 없애고 일부금액 동일 지원으로 조정

- 단일화된 보육료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함.

- 지원 대상자 선정의 간소화 및 소득 조사의 객관성 확보

-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징수 확대

- 종일반 오후시간 교육비 차등 지원

-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함.

다)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공보육화 실현 노력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 재분배 가능성을 도모하므로 유아교육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수단임.

- 학부모에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사정에 따라 어느 곳을 입학하든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취원을 확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만5세의 경우 모든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함.

- 교육비 지원에 따른 정기적인 유치원 감사를 통하여 유치원의 책무성을 인식시키고 질적 수준을 제고함.

-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월 10만원 정도로 높여야 함.
- 학부모에게 지급되어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 홍보 필요

라)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특수 교육·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장애아의 보상정책(보상적 평등)
-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음.
-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장애아 교육 기회 보장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장애아동의 발달 상태에 맞는 보육이라는 기존의 정책의도에서 벗어나, 보육 시설의 수익(영아반 기본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
- 개인도우미 지원 확대
- 지원 확대
- 소득에 대한 차등 지원
- 일반아동과 똑같은 무상교육 지원

마)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인구 증가에 기여
- 출산 장려 효과
- 더 좋은 환경에서 유아들을 교육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한 자녀가 초·중등학생이라도 다른 한 자녀의 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해 주어야 함.
- 자녀수보다는 가구별 수입에 의한 차등지원방안 마련
- 수혜자의 경제적 형편과 양육여건(맞벌이여부)에 따라 지원하며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함.
- 모든 가정에 지원
-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 소득과 상관없는 지원

바)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농어촌의 출산 장려 효과
- 귀농인구 증가에 효과
- 농촌 살리기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유치원 자녀 교육비 지원등 감면 아동 보육료와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 보육료 지원책은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함.

<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가)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평가 인증사업 덕분에 지방의 보육시설은 물리적 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됨.
 - 영세한 시설 운영의 안정화 및 관련 종사자의 처우개선
 - 공교(보)육을 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유아안전 및 복지여건 개선
 - 안정적인 보육에 도움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현재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곳은 그 비용을 비축하여 새로운 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종일반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시설기준 상향 조정
 - 물리적 환경 외에 병가나 연가시 아동관리를 위한 교육청 인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아이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개선

나)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사립 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기대하기 보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국공립의 확충은 앞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 학부모들의 경비 절감 및 교사들의 일자리 창출

-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 및 보편화
- 공교육의 활성화, 향후 저출산 해결 과제임.
-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교육실현
- 취원을 제고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 공보육의 기반 구축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도 요구됨.
- 무조건 국공립 확충보다는 기존의 민간, 사립기관을 법인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 강화, 법인시설과 지원액을 차별화
- 규모에 상관없이 시설수 늘리기에 의존하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의미가 없음.

<유치원·보육시설 질적 수준 제고 정책>

가) 기관 서비스의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보육현장의 기본적인 질 관리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는 컸음.
- 많은 개선이 있다고 평가함.
-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유아교육의 발전을 도모함.
- 난립되어 있고 비교육적 수준의 교육 환경 개선
-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 정립 계기 마련
-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 강화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주기를 3년에서 4~5년으로 늘이고, 지표수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완 필요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공통의 질 관리(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치원평가)가 필요
- 재정지원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성과를 이룰 수 있음.
- 문서를 간소화하여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기관의 부담을 줄여야 함.
- 인증 통과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나)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교육의 질적 제고
- 보육 교사의 자격관리가 꼭 필요하고 보수교육이나 장학이 필요함.
-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으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체계적인 관리 및 교사 자질 향상
- 교사에 대한 평이나 경력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야 경쟁력이 있음.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현재 35학점은 대폭 늘여서 관련학과의 비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중지해야 할 것임. 보수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며, 보수교육기관 평가가 필요함.
- 기존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급수별 차등과 더불어 선임 및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으로 인사조직의 위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전문대 출신과 4년제 대학 출신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자격 구분이 필요함.
- 유아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연수교육 시설을 보육시설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양성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통해 교사의 자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됨.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가)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저출산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영아는 가정에서의 교육·보육이 보다 바람직.
 -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
 - 안정된 영유아 관리
 - 저소득층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전염병 등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 필요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확대하지 말고 소용되는 경비를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출산 휴가를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개월 이후 영아는 기존의 보육시설 이용으로 대체 가능
 -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인지 의문스러움.

나)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 계속 추진되어야 할 이유
 - 농어촌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고 보육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바람직함.
 - 농어촌 생활개선 도움 기대
 - 젊은이들을 농어촌으로 불러들이는 제도
 - 일과 양육이 잘 구분되지 않는 농촌여성 및 아동 지원
-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 농업인으로 가정에서 받아 가계지원 정도로 쓸 수 있으며, 유아의 복지를 위하여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의문임. 직접적인 유아들의 보육에 투자를 해야 함.

- 소득수준에 따라 도시여성근로자에게도 양육비 지원 요함.
-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음.

〈표 II-2-7〉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 원 (42)	보육 시설 (39)	전체 (112)	유치 원 (62)	보육 시설 (50)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17	13	4	31	23	8	44	43	1	43	40	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2	10	12	20	5	15	37	7	30	40	16	24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 수당 지원	18	13	5	21	18	3	30	21	9	45	41	4
보육행정 시스템구축 사업	13	7	6	19	1	18	28	4	24	19	5	14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6	4	2	9	4	5	23	19	4	19	17	2
기타보육 (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13	6	7	15	3	12	23	3	20	18	7	11
영아 기본보조금	17	9	8	11	2	9	20	5	15	17	8	9
차등교육비 보육료지원	15	7	8	15	4	11	24	11	13	17	7	10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지원	27	16	11	28	14	14	39	25	14	42	32	10
장애아 무상교육· 보육지원	21	11	10	20	6	14	31	15	16	28	14	14

〈표 II-2-7〉 계속

단위: 명

계속 추진 정책과제	전문가			공무원			원장·시설장			교사		
	전체 (51)	교육 (28)	보육 (23)	전체 (62)	교육 (27)	보육 (35)	전체 (81)	유치 원 (42)	보육 시설 (39)	전체 (112)	유치 원 (62)	보육 시설 (50)
두 자녀 이상 교육비· 보육료지원	14	7	7	16	6	10	37	19	18	26	15	11
농어업인 자녀영유아 양육비지원	13	6	7	11	3	8	21	8	13	16	6	10
보육시설 물리적환경 개선 사업	15	8	7	6	1	5	26	4	22	14	6	8
국공립유치 원·보육시 설 확충	16	10	6	24	15	9	23	16	7	28	16	12
기관 질 관리사업 (평가인증, 장학 등)	27	16	11	24	15	9	23	16	7	28	16	12
교사 자격관리/ 보수교육 강화	27	17	10	23	13	10	32	14	18	31	18	13
영유아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11	5	6	20	9	11	35	19	16	33	22	11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지원	7	5	3	3	0	3	3	0	3	7	6	1

2)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제안¹⁾

가) 유아교육 전문가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4)

-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 전업주부의 육아지원 방안 강구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11)

- 인증제 확대와 시설 수준 높이기
- 교사 대 아동 수 줄이기
- 아동 1인당 교실 면적 확대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정책
- 유사 유아교육기관의 감독 관리 기능 강화 정책 도입
- 유아교육·보육 정보화 정책
- 유아교사 평가제
- 유아교사 계약연봉제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을 하향화 관련 연구
-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와 직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9)

- 일원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 시범적인 모델 개발
-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또는 기능별 구분 방식의 통합 정책

1) ()의 숫자는 제안자 수를 나타냄

-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 함께 유아학교로의 전환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된 행정기관 지명 혹은 새로운 설치
- 유아교육과 보육교사의 일원화된 교원양성기관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방안
-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양성교육 기간 통일
- 교육과 보육의 동일한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
- 교육과 보육의 분리가 아닌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4) 직장 여성의 육아지원제도 강화 (1)

- 취업모의 육아 휴직시스템 강화

(5) 유치원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4)

- 종일제 확산
- 유치원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
- 공립유치원의 단설화
- 만5세아 유치원 의무교육화

(6)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

- 보육행정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7) 지나친 교육열 자제와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추진 (2)

- 영어유치원, 학원 등 재정비, 교육과정 정상화
- 영·유아 사교육(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 마련

(8) 농어촌 육아지원강화 (2)

- 만5세아 무상 교육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급식비·교육비를 무료지원
- 농촌지역 차량운행에 따른 지원

(9)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

(10)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1)

(11) 기타 (2)

- 육아비 지원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생애초기 문화적·예술적 경험 기회가 부족한 유아들의 적극적 지원

나) 보육 전문가

(1) 교사자격제도 개선(7)

- 보육교사 자격강화
- 초등교사의 유아교사 자격인정제도 개정
- 장애아 입학에 따른 특수교사 지원을 사립기관으로 확대 시행
- 교사자격제도 강화 방안 연구
- 보수교육의 필수화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2) 교사처우개선(10)

- 보육시설 교사 2교대 근무
- 보육시설 교사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및 보조교사 도입

- 교사 처우 개선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축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 교사인건비를 현실화해야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음
- 대학에서의 교육연수에 따른 차등호봉제 실시
- 연구 인센티브제 활성화
- 보육시설의 보수교육이나 유치원의 연수를 받는 교사의 공백을 메울 대체교사를 확보하여 제공

(3) 유아교육·보육 일원화 (5)

-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및 통합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자격 일원화

(4) 보육료 자율화 (2)

- 보육료 자율화
- 보육과 교육의 통합

(5) 보육료 지원 확대 (7)

- 저소득층 보육 강화
-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확대
- 장애아 무상교육/보육지원의 확대
- 만 5세의 의무교육
- 공보육의 현실화
- 무상교육·보육 확대
- 현실적인 교육비 지원

(6)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5)

- 전업주부의 육아지원 방안 강구
-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아 양육지원의 구체화(시설 중심이외의 가정지원 사업)
- 문제가정의 지원사업
-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7) 국공립유치원 대폭증설 (2)

- 신설보다는 가급적 기존의 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8) 공공성 강화 (4)

- 지도감독 및 국공립시설 위탁체계의 투명성
- 평가인증 지원 강화
- 평가인증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제 실시
- 민간보육시설의 질 개선

(9)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자격 기준 개선 (4)

-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아전담 장학사를 확보
- 장학지도 요원의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성장화와 사전 교육을 실시
- 보육시설의 장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10) 기타 (14)

- 시간제 보육료 적용
- 표준보육료 인상

- 시간 강사 교사의 강사료 최저금액책정 및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과 출결을 관리
- 직장보육시설 바우처 제도
- 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 유아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 법제화
- 교재교구지원체계: 사립시설을 회원제로 한 교재교구대여 지원시스템
- 보육정보센터 확보
- 발달진단검사서비스 실시
-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 필요
- 대학의 보육관련학과 실습실로서 보육시설 의무화
-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선정제
-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우선 지원해야 함
- 지원 정책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중단연구가 필요

나) 공무원

(1)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정책 (15)

- 많은 부분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동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 교사 수당 지원액, 교사자격 인정부분.
- 행정기관의 일원화
- 보육(0~2세)과 교육(3세~5세)의 분리. 각 영역의 전문성 확보, 현재의 이원화 체제는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

(2) 유치원의 의무 취학화 또는 공교육화 정책 (4)

- 만5세아 전면 의무교육 추진
- 안정된 교육지원체제 확립

(3)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5)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최소화, 교육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4) 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 (14)

-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책: 국가에서 전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함.
- 유치원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종일반에 보육전담 교사 배치
- 유치원 학급보조자봉사자 훈련지원 연수비 지원
- 법인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에서 모든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급

(5) 유치원·보육시설 기관 질 관리 강화 (13)

-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 보육시설 환경 질제고: 인가시 실외놀이터 면적 재조성, 평가인증 의무화
-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강구방안
- 유아 및 보육 분야에 자격을 강화

(6)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3)

- 종일제 운영이 유치원마다 큰 숙제로 남아 있음. 현실성 있고 현장을 배려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 교사에게 집을 떠맡기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 및 근무시간의 다양화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이 필요하며, 이는 인력이나 운영비 등 어느 한 유치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구청별로 종일제 중심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7)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3)

- 유치원 관련 전담 장학사 확대
-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8) 사립유치원 감사의 법적 제도화 (2)

(9) 기타 (14)

- 초등학교 신설 시 반드시 병설 유치원 함께 개원: 저렴한 수업료, 질높은 교사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농어촌 공립유치원 차량지원: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됨
- 저출산 예방 및 건강한 육아지원
- 각 시·도별 현장체험학습장 및 유아교육연구원 설립 운영: 유아교육에 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유아의 현장체험학습의 기회가 확대되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짐.
- 단설유치원 설립추진 사업
- 민간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 지원
- 0~3세 부모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확립
- 농어촌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 보육서비스의 청소년까지 확대
-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근무 경력 상호 인정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확대 강화
- 보육료지원의 개선

다) 유치원 원장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26)

-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 부처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 교사 양성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지원체제의 일원화
- 취원 대상아의 구분: 유치원을 만3~5세, 보육시설은 만0~2세
-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리 운영하고, 각 부처 간의 역할 정립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33)

- 유치원에 유아교육전공자 100%배치
- 학급당 보조원 배치
- 공립유치원에는 전담 원감배치 의무화
- 종일반 교사 채용 기준 수정: 종일반 정교사 배치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리 감독 철저
- 평가: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나 사설기관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미달된 기관은 철저한 평가
- 학급당 인원수 감축/유아 대 교사의 비율 낮추기

(3)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6)

- 유아담당 장학관 배치/시·도교육청에 전공자 배치
- 교육청 유아교육과 승격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4)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5)

- 병설유치원의 2~3학급의 학급수를 6학급 이상으로 확대
- 각지역청별로 단설유치원 1개원 이상 설립
-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학급 증반 의무화
- 기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5) 교사처우개선 (10)

- 유치원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 기타: 유아교육, 보육에 근무하는 교사의 사기증진 등

(6) 의무교육/무상교육 실시 (16)

- 유아교육(유치원) 의무교육실시: 만 3세 만5세 의무교육
- 만5세아 무상 교육 전면 실시

(7) 재정 지원 확대 (17)

- 체험교육원 신설: 각시·도별 2~3개
- 학습 준비물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 차량지원: 공립유치원 차량 배치 지원/지역교육청별차량 배치

(8) 기타 (8)

-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 천차만별인 유아교육기관을 재정립
- 서울에서 실시하는 보육과 교육을 지방에도 확산하여 실시
- 공립유치원 행정실에 기능직 배치 의무화

- 유아-중고령 협력망 구축 사업
- 유아교육의 중요성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크게 인식 필요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가족 수당 예산 편성

라) 보육시설 시설장

(1)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6)

- 유아교육과 보육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부처 제3부처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구분: 0~4세, 5세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별화된 운영 역할에 따른 분담

(2)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7)

- 보육교사 양성소폐지
- 종사자의 자격관리 강화
- 시설장 보수교육 강화
-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
- 보육시설 원감 근무체계 도입

(3) 유치원·보육시설 공공성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1)

- 보육법인 필요

(4)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2)

-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문가 배치: 프로그램 관리 및 장학 업무

- 보육정보센터나 장학사 등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관리

(5)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6)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가정보육시설의 국공립화
- 민간 보육시설을 국가가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6) 교사처우개선 (19)

-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 준수여건 조성
- 교사 호봉제도 정비: 호봉 및 급여체계 상향 조정 및 채용 확보, 유치원과 동일한 호봉 및 급여체계, 보육시설 교사들의 기본급 인상, 보육교사 급수에 따른 차등 보수 등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등급과 경력에 따른 인건비 지원,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 등
-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시간외 수당, 안전수당 등
- 보육교사 담임수당 신설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 도입

(7) 재정 지원 확대 (19)

- 영아기본보조금 상향 조정
- 유아기본보조금 전면 도입
- 유아기본보조금 평가인증 시설에 우선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무상지원: 전면 도입,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한 단계적 무상지원 등
- 셋째아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자녀 모두에게 보육료 지원

- 둘째아 지원 확대
- 저소득지원 및 농어촌지원 등 산발적인 정부 지원 일원화
-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취사도우미, 청소, 차량뒷좌석 탑승자 등 도우미 및 비담임지원
- 가정보육시설의 공동주택시설의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
- 환경 개보수비 및 기자재비 확대 지원
- 특수보육시설의 시설운영비 지원
- 재정이 열악한 중소도시 국공립 시설에 아동보호차량 지원

(8) 각종 제도, 규칙의 유연성 강화 및 업무, 서식 등 간소화 (5)

- 행정업무 간소화
-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정책을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
- 재무회계의 이원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재무회계를 다르게 함.

(9) 기타 (10)

- 특수보육 중 장애아 통합보육은 그동안 양적인 증가로 팽창되었으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인적 자원이 우수한 보육시설조차 장애아동 확보의 어려움
-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공존하고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과 교류와 인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예: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경력 상호 인정
-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학부모가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 교육이나 보육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주체성이 확립된 교육·보육·철학·정책이 확립되도록
- 각 지역별로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 설치
- 가정내 다양한 육아 서비스의 일원화
- 각 지역별로 무료 아동상담소 설치

- 0세아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 간식비, 식대는 보육료와 별도 수납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차량운행 금지 법규화

마) 유치원 교사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1)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 내 파견사업

(2)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38)

- 학급당 보조교사 배치
- 병설유치원에 종일반 정교사 배치
- 유치원 교사 수업시수 법제화
- 교사 연수 기회 확대
- 학급당 인원 수 감축
- 질 높은 우수한 기관의 확보 및 확대
- 교사 자격 관리 강화
-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별도 교실 확충
- 기관의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강화)
- 중복되는 평가 및 장학 줄이기
- 과도한 평가 경쟁 피하기
-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 종일반 물리적 환경 개선
- 3학급 이상에 전공 원감 배치
- 모든 병설 유치원에 원감 배치

- 4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조원 2인 배치
- 에듀케어반 전담 보조인력 배치
- 평가를 통해 우수유치원에 인센티브 제공
-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16)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일원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할 부처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체제

(4)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18)

- 유치원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공교육화)
- 유치원을 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
- 사립유치원 법인화
-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보육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 감사

(5)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12)

- 유아교육계를 유아교육과로 승격
- 유아교육과 내 유아교육전문가 100% 배치
- 유치원의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6)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14)

- 공립 단설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증설 및 확대 추진
- 공립유치원 분담률 50% 확대(2010년까지)

- 모든 학교급(초등, 중등 모두)에 3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 신설
- 신설학교 개설시 유치원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을 법제화

(7) 교사 복지 정책 (10)

-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지 문제 개선 정책(처우개선비 마련, 근무 환경 개선 등)
- 종일반 담당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종일제 교사의 시간 외 수당 지원
- 방학 중에도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사 처우개선

(8) 기타 (17)

- 공립유치원 차량 배치
- 0세부터 유치원 교육의 시작
-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 규제
- 교육과 보육의 본질을 차별화하여 정책 수립
-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분류
- 교사의 사기 양양
- 외국연수 프로그램에 유치원 교원 확대
- 낮은 연령 담임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 법인 시설의 이원화된 서류 일원화
- 유치원 전원 급식비 보조 및 차량 지원
- 유치원지원금을 교재교구비 한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1, 2월생 학교 입학

바) 보육교사

(1) 가정 양육 지원 강화 (3)

- 가정 내 육아 서비스 지원의 강화
- 전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2)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및 교사 자격 강화 정책 (8)

-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관련학과의 정비
- 보육교사 자격 인정 제도
- 보육교사 및 시설장 질 관리
- 민간 보육시설 질 관리
-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리 감독
- 기자재 및 시설 지원 확충

(3)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3)

-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제 일원화
- 유아교육과 보육의 교육과정 통합

(4) 유치원과 보육시설 공교육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정책 (3)

- 만 5세아 무상 보육 지원
- 유아교육 의무화
- 보육의 공공성 실현

(5) 보육 및 교육 행정과 지원체계 개선 (2)

- 유아교육 전공자 및 유경험자의 관련 공무원 특채 채용 기회 확대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6)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2)

－ 국공립 시설 확충

(7)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2)

－ 이주노동자, 새터민, 혼혈인 자녀 등 사회 소수계층과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통합보육

－ 다문화 가정 지원

(8) 교사 복지 정책 (20)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근무자의 복리후생(월차 및 공식적 휴가기간)

－ 대체교사 인력 지원

－ 시간 외 수당 지급

－ 종사자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책 마련

－ 학력 및 교육성과에 따른 호봉 책정

－ 처우개선비 지급

－ 교사에 대한 질적, 양적 지원

－ 보육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

－ 토요일 휴무

－ 3개월 출산 유급 휴가의 사회적 확산

－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비담임 교사 인건비 지원

(9) 기타 (14)

- 기존 수행 정책의 내실화
-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위원회 구성
- 시간제 보육 제공
- 16시간 운영제와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사례 전파
-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으로의 지원 체제 변경 확대
-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정책
- 사립과 민간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기준 강화 및 장려
- 표준 보육 단가 현실화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과 영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운영사례 전파
- 저출산 대비 정책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고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
- 보육시설 조리사 인건비 지원

라. 요약

- 유아교육 전문가 및 공무원, 유치원장 및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을 지지하고 있는 정책은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비 지원 정책**임.
 - 그 외 계속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립유치원교사 학급 담임수당 지원,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농어촌 공립유치원 차량지원과 함께 유치원 질제고 정책(질 관리 사업, 교사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임.
 - 응답 집단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관리와 유치원 질 관리 사업 등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을 가장 지속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공무원과 현장관련자들은 유치원 종일제 지원, 학급담임수당 등 유치원 운영지원 정책을 많이 지지함.
- 보육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보육시설장, 교사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 추진

- 을 지지한 정책은 국공립·법인·장애·영아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임.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사업, 평가인증 등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 그리고 영아 기본보조금 등 각 보육료 지원정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지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모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보육시설 질제고 정책을, 공무원은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을, 보육시설장은 행정시스템과 함께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보고 있음.
 - 보육 관계자들은 보육시설 질 관리 사업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차등보육료지원 등을 꼽았음. 특히 질 관리 사업은 재정지원과 연계를 하고 평가인증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함. 이 밖에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강화 및 법인화 실시, 무상보육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봄.
-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현장 관련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제고와 교사자격 강화, 재정지원의 확대,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교사처우개선,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 공공성 강화, 가정양육 지원강화 정책 등을 지적함.

Ⅲ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Ⅲ.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육아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차기정부 육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안함.
이 과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의 보장이야말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환기시키고,
육아시설 이용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정부는 육아지원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기준을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때문에 육아지원시설의 안전수준에 대한 부모나 일반인의 평가는 낮은 편임.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은 육아지원시설에서의 최소 수준의 영유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안전 전문가들은 일부 육아지원시설의 안전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육아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아동 안전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전체 아동을 위한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안전 관련 기구들을 연계 통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야 함.

가. 배경

- 차기정부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관련 안전환경 조성을 육아정책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하여 미래인력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집중해야 함.
-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다수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상태가 미흡한 수준임.
 - 육아지원시설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의한 사고, 실내외 놀잇감에 의한 사고, 영아들의 질식사고, 통학버스 관련사고, 아동학대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사고는 우리나라 아동의 사망과 장애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개인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동의 사고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다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시작됨.

- 1996년 ‘아동안전육성 종합대책 시안’ 발표(보건복지부) : OECD가입 이후, OECD에서 요구하는 아동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실천방안 없음.
- 1999년 아동시설 안전강화대책 발표(국무조정실) :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대통령의 지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안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자동소화설비 설치의 의무화와 건축물 내부 장식품에 대한 방염의무화,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기록대상 배치 의무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설운영자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내실화 등 추진함.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안전에 관해 입법화하여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적 문제차원에 머물던 아동보호를 사회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마련함.
- 2001년 서울시아동안전종합대책 수립(서울시) : 유니세프에서 OECD 26개 회원국들의 아동상해사망조사발표 후 국내 각 부처 정책결정자들이 어린이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서울시 행정팀으로 가정복지담당관실 내 아동복지팀에서 아동안전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사업을 추진함.
- 2002년 어린이보호육성추진단(이후 어린이보호 육성협의회) 조직 :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이 되어, 7개 부처가 어린이보호육성 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 5개 중점추진과제 중 ‘어린이안전 강화’가 포함됨.
- 2003년 어린이안전점검단 설치(청와대) : 각 부처의 아동 안전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각 부처에서 아동의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부처가 없는 점을 문제삼아 현 참여정부에서 81회 어린이날을 기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삼고, 2007년까지 어린이사고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어린이안전점검단’을 청와대 내 비상설기구로 설치함.
- 2003년 6월부터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총 76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76과제에서 어린이제품안전대책 23개 과제를 추가하면서 총 99개 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 중복과 혼선으로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유아가 육아지원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나. 현황

1)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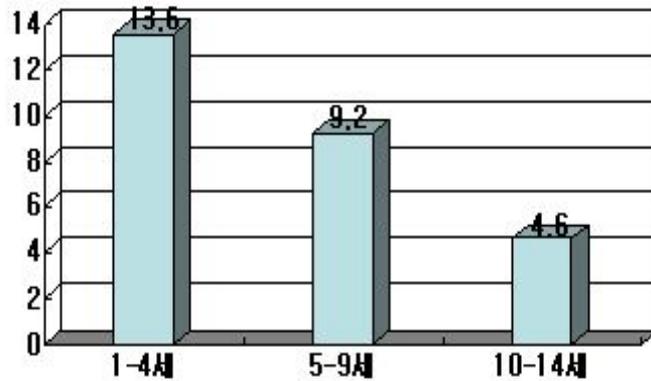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의 조성은 육아시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상해는 아동과 부모, 육아시설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이후 범 정부차원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 7.3명(10만명 중)보다 여전히 높음.

〈표 III-1-1〉 나라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단위: 10만명 당

한국 (2000)	한국 (2005)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영국	스웨덴	OECD 평균
14.8	8.3	10.2	7.3	6.5	5.8	5.0	4.1	3.8	3.8	7.3

- 어린이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안전사고는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의 연령과 장소에 따라 사고유형 및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매년 14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40%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은 것임.
 - ※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10만명 당 1~4세 13.6명, 5~9세 9.2명, 10~14세 4.6명으로 1~4세아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음.
 - 1~4세 영유아 안전사고 사망률은 1999년 19.9명, 2001년 15.7명, 2003년 13.6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사망자수 대비 안전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은 39.6%로 최근 6년 동안 평균 40%선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II-1-1] 연령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도시지역 어린이 안전사고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5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2004).
 -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실외놀이터 31.9%, 교실 29.7%로 대부분이 이 두곳임.
 -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영유아들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사고가 2004년 2,528건, 2005년 2,688건, 2006년 2,533건으로 가장 많음. 이외에도 끼임, 이물질 삼입, 화상, 식중독·급식 및 통학버스 사고가 상당수 임.
 - 특히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통학버스에 의한 안전사고는 2004년 27건, 2005년 47건, 2006년 45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사망사건이 각각 3건, 5건, 3건으로 안전사고의 심각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심각함.

〈표 III-1-2〉 유형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딪힘/넘어짐	2,528건 (전체 사고의 84.2%)	2,688건 (전체 사고의 85.0%)	2,533건 (전체 사고의 68.2%)
통학버스	27건 (사망 3건)	47건 (사망 5건)	45건 (사망 3건)

- 보육시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유아 부주의가 전체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함. 그 밖의 원인으로는 아동간의 다툼, 종사자 부주의, 시설물 하자를 들 수 있음. 시설물 하자 또는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유아부주의나 아동간의 다툼에 비하여 쉽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표 III-1-3〉 원인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2004년, 2005년, 2006년, 여성가족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유아 부주의	2,140건 (전체 사고의 71.3%)	2,245건 (전체 사고의 71.0%)	2,525건 (전체 사고의 67.9%)
아동간의 다툼	724건	744건	842건
종사자 부주의	65건	91건	159건
시설물 하자	31건	27건	70건

2) 안전관련 법령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규를 OECD 국가들의 안전관련 법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2006).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설계단계부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며 건물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편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유치원은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음.

- 육아시설에 대한 관련법이 다양하며,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음.
 -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은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많은 법령과 관련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에 대한 조항을 두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보호자와 교사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보육시설의 화재와 관련된 방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정부는 육아지원 기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최고 20배 이상 증액하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한 물리적인 안전 환경 조건을 강화하여 왔음.
 - 시설의 위치, 실내의 설비기준 강화와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육아지원기관 운영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 유치원과 관련된 안전관리 내용은 2006년에 발간한 「유치원시설안전관리 매뉴얼」 과 「2007년도 유치원평가편람 시범평가」 에 제시되어 있음.
 - 「유치원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에서는 건물 및 주변환경, 실내환경, 실외환경, 비상대응 및 관리 등 네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도 유치원평가편람 시범평가」 에서는 교육환경영역에서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안전성-시설·설비의 안전관리’ 항목과 유아의 건강·안전영역에서 ‘안전관리의 적절성-유아, 교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안전사고 대비책’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아 및 교사 대상 안전교육내용을 명시함.

〈표 III-1-4〉 유치원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사항(2006년)

건물 및 주변환경	실내환경	실외환경	비상대응 및 관리·감독
1. 유치원의 입지조건 2. 소방차 접근 등 활동여건 3. 전봇대·고압전선 등 주변환경 4. 교통환경: 통학버스 안전관리시스템, 운전자 및 통학버스 안전 담당자, 주변교통 환경	1. 교실 교실공간 비품, 놀잇감, 가구 2. 복도 및 문 3. 계단 4. 난간 5. 화장실 6. 현관	1. 놀이시설 2. 바닥 3. 울타리 및 담	1.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훈련: 발화방지, 감지·경보 및 소화, 피난 안전성, 화재대피 훈련·교육 2. 비상대응계획 3. 관리·감독 안전교육 안전감독, 안전사고 일지 기록

〈표 III-1-5〉 유치원 시범평가 편람 안전교육내용(2007년)

유아대상 안전교육	교사대상 안전교육
1. 교통안전: 안전한 보행 및 등하원 차량 이용 포함 2. 놀이시설 안전 및 놀이규칙 3. 아동학대(성폭력 포함) 및 유괴 4. 소방대피훈련 5. 자연재해 대피훈련	1. 안전관리지도법 2. 응급처치법 3. 화재 및 화상 대처 4. 아동학대 및 유괴 5. 식중독 6. 교통안전 7. 놀이시설 안전 8. 소방 대피훈련 9. 자연재해 대피훈련

□ 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 내용은 2007년에 발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침서」에 제시된 안전영역에 ‘실내외 시설의 안전’과 ‘영유아의 안전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III-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안전영역의 지표 내용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영유아의 안전보호
1.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2. 실내시설(보육실외)의 안전관리 3. 보육실의 설비와 놀잇감의 안전관리 4. 위험한 물건의 보관	1.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2. 영유아의 인계과정 3. 등원 및 귀가용 차량 운행 4.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및 공지 필수항목) 5.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설비와 대처방안 6.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3) 안전예방교육 및 부처별 안전대책 분산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일반성인 대상 안전교육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사고 정보 분석시스템이 미흡함.
 - 통계청 사망사고, 학교안전공제회, 소방방재청 등에서 안전사고 건수가 집계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원인분석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 현재와 같이 각 부처 관계부서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가 분산 관리됨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위험요인을 규명이 어렵고, 종합적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 안전대책’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부처별 추진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중복 등, 안전대책 수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 각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각 부처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노력도 미흡함.

다. 세부 과제

1) 아동 안전 종합대책 수립

- 2003년에 수립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의 종료와 함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아동 안전사고 부분까지 포함한 아동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포하면서 향후 5년간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현재의 1/2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2003년 6월에 마련되었음.

2)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 육아지원의 최우선과제로서 종합적인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아동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기구들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아동안전 관련법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아동 안전사고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실시, 육아지원시설의 안전 환경 관리감독,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안전사고 관리 사업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안전관리 사업별 평가가 필요함.
 - 아동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3)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육아시설과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구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내실있는 아동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함. 아동과 유아 교육·보육 종사자,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있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매체 개발·보급
 - 유치원·보육시설 안전교육 지도와 안전성 평가 실시
 - 유치원·보육시설 아동 및 부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실화
 - 유치원·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수 교육에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 어린이 전문 안전관리 교육과 양성
-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과 기타 아동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함. 또한 육아시설 주변 환경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함.
- 육아시설 안전환경 구성을 위한 안전표준모델 및 세부지침, 보급, 관리
 - 육아시설 주변 환경의 상시 안전관리 필요
- 가정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예방 프로그램 필요함
- 어린이 안전사고 60% 이상이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어린이 안전 취약분야인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육아시설과 가정에서의 아동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리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함.
- 지역사회의 병원, 소방서, 경찰, 구청, 육아지원시설,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보건 및 간호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일반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기회 확대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영유아와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기회 확대에 차기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어 소외 아동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 확대는 차기 정부의 필수 과제임.
-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기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함. 향후 5년간 장애영유아를 50%까지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영유아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장애영유아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장애영유아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통합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이 절실함. 향후 5년간 장애영유아 통합 학급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80% 수준으로 확보해야 함.
-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제도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영유아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며 일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영유아 가족을 지원해야 함.

가. 배경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미흡함.
 - 장애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음.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다니기 위하여 1~2시간의 통학시간을 감수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장기체류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 제도상으로는 장애영유아 부모가 원할 경우 어느 기관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조건을 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일관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장애영유아 통합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정부의 지원은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과 사립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름.
- 이념과 제도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은 장애영유아 전담기관 우선으로 되어 있음.
-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은 전담기관에 비하여 인력지원과 지원 인력의 배치 미흡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 보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추세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없어 내실 있는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이 어려움.
 -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지원이 다르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다름.
- 장애영유아 가족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시스템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족이 처음으로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상담할 곳이 없음.
 - 장애영유아의 형제자매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없음.
 - 장애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 장애영유아 가족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비나 교육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향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접근성 제고와 프로그램의 내실화,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나. 현황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현황

- 국립특수교육원의 2001년 조사 자료를 참고로 0~5세 장애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하면 2006년 현재 19.77%의 장애영유아들만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 시설에 배치되어 있어, 5명당 1명만이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음.

〈표 III-2-1〉 장애영유아 배치 현황(2006년)

							단위: 명, %
0~5세아 인구수	장애영유아수 추정 2%	특수 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통합 보육시설	기관배치 장애영유아 비율	
2,999,461	59,989	1,114	2,129	5,406	3,212	19.77	

□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현황은 〈표 III-2-2〉, 〈표 III-2-3〉 과 같음.

-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일반유치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수가 1,591명으로 특수교육기관이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수에 비해 많음.

〈표 III-2-2〉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 현황(2006년)

								단위: 개교, 개원, 명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관수	학급수	유아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
123	274	1,114	130	151	538	1,013	1,270	1,591

주: 특수교육기관은 유아특수학교나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말함.

- 보육시설의 경우 유아교육기관과 달리 전담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수가 5,406명으로 통합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수 3,212명 보다 많음. 통계는 없으나 일반 보육시설에도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표 III-2-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현황(2006년)

					단위: 개소, 명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시설수	아동현원	시설수	아동현원	장애아동 현원	
144	5,406	732	48,898	3,212	

-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수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지방의 경우는 특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은 대기자가 많은 실정임.

2)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지원 현황

가) 유아교육기관 지원 현황

-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고 있음.
-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장애 유아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뿐으로 기관에 대한 지원은 없음.
 - 2007년 현재 월 361,000원 이내에서 지원함.

나) 보육시설 지원 현황

- 보육시설의 경우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시설별 차이가 있음.
 - 장애아전담지정시설의 경우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1인당 80%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애아 1인당 29만 2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급함.
 - 장애아통합지정시설의 경우 통합교사를 배치하고,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에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에는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함. 이외에 장애아통합지정시설에 29만 2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급함.
 - 일반보육시설은 장애아가 포함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며, 정부지원시설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80% 또는 30%를 지원함. 민간개인보육시설에는 교사대 아동 비율 1대 3을 기준으로 29만 2천원, 1대 5 기준 13만 4천원, 1대 5 기준으로 8만 6천원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함.

〈표 III-2-4〉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 기준(2007년)

구분	지정 주체 및 기준	인건비 지원 (교사 1인)	기본보조금 (장애아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담지정시설: 전담교사 배치				
- 인건비 지원		80%		361천원
- 기본보조금 지원	시·군·구청장		292천원	361천원
2. 장애아 통합지정시설: 통합교사 배치				
- 인건비 지원		80% (국공립·법인)		361천원
- 기본보조금 지원			292천원	361천원
3. 일반보육시설				
국공립·법인보육시설	- 1대 3 기준	80%		361천원
	- 1대 5 기준	80%		317천원
	- 1대 7 기준	80%		262천원
	- 1대 15 기준	30%		180천원
	- 1대 20 기준	30%		162천원
민간개인보육시설	- 1대 3 기준		292천원	361천원
	- 1대 5 기준		134천원	317천원
	- 1대 7 기준		86천원	262천원
	- 1대 15 기준		-	보육료 상한액
	- 1대 20 기준		-	보육료 상한액

3) 통합기관 인력 현황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인력(특수교사, 치료사, 일반교사, 순회교사, 외부자문 인력)은 없는 경우가 과반이며,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특히 사립유치원에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함.

〈표 III-2-5〉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2007년)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44.6(308)	55.4(382)	100.0(69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5.1(75)	44.9(61)	100.0(136)
사립유치원	10.5(30)	89.5(257)	100.0(287)
국공립보육시설	81.8(108)	18.2(24)	100.0(132)
민간개인보육시설	70.4(95)	29.6(40)	100.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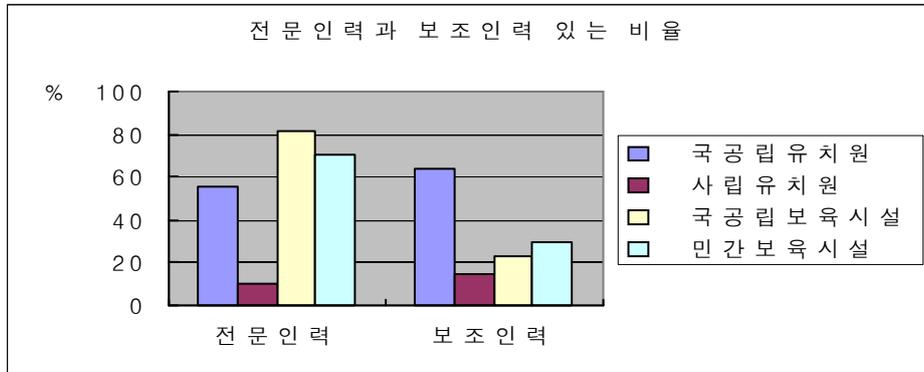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인력(보조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자활후견인, 자원봉사자 등)이 있는 경우가 30%를 밑돌고 있으며, 기관과 설립유형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특히 사립유치원에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함.

〈표 III-2-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유무(2007년)

단위: %(기관수)

구분	있음	없음	계
전체	29.3(196)	70.7(474)	100.0(670)
기관·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63.7(86)	36.3(49)	100.0(135)
사립유치원	15.2(43)	84.8(240)	100.0(283)
국공립보육시설	23.6(30)	76.4(97)	100.0(127)
민간개인보육시설	29.6(37)	70.4(88)	100.0(125)

-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부족함.
- 특히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모두 사립유치원이 가장 부족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통합학급에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우선, 전문인력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보조인력은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2-1]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있는 비율

4) 가족 지원 현황

- 장애영유아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 없음.
- 정부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영유아 가족이 일반아 가족에 비해 교육(치료)비, 의료비, 양육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장애영유아들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 부양수당과 장애아 입양수당을 지급하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임.

다. 세부 과제

1)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담기관과 통합육아시설 확충
 - 장애영유아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담기관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

설을 활용하여 통합육아시설을 확대, 향후 5년 간 장애영유아의 50%를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홍보를 강화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도 장애영유아 통합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장애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대한 전폭적이고 내실있는 지원

- 일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을 차기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 장애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경우 육아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원을 받도록 함.
 - 전담기관과 통합기관, 유치원과 보육시설, 국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에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장애영유아가 교육이나 보육을 받고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정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3) 장애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 담당 인력 지원

- 인적 자원 제공
 - 통합육아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향후 5년까지 80%까지 확보하여 장애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영유아 담당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교사가 통합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통합보육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장애영유아 담당 인력에 대한 질 높은 현직연수 기회를 제공함.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장애영유아 이해와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전문가 지원 체제를 가동시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4) 가족지원 체계 확립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제도화

- 지역사회 기존 복지기관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 부모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상담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영유아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함.

재정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가정의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 아동인구가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질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면에서 소외되어 왔음. 자녀양육환경이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임.
-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등하원 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빠른 시간내 설치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종일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영유아별 교육·보육 비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함.

가. 배경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아지원의 현실상, 아동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양질의 육아서비스가 편중되어 왔음. 기회균등을 위해 농어촌 영유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어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에 대한 특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임.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농번기·농한기 등 시기별로 균등하지 않은 육아지원 수요 등 전형적 특성과 더불어 소득원의 다양화, 교육과 문화 기회의 상대적 부족 등 지역 여건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해야 함.

나. 현황

1) 유치원

□ 농어촌 지역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매우 높음.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의 짧은 이용시간, 장기 방학, 통학차량 미운행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음.

-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8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취원아 비율은 45.1%로 기관수에 비해 매우 낮음.

〈표 III-3-1〉 지역구분에 따른 유치원설치 및 취원아동 현황(2006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수	비율		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치원				
전체	8,290	53.8	46.2	100.0
대도시	2,357	23.3	76.7	100.0
중소도시	2,711	44.4	55.6	100.0
농어촌	2,763	81.9	18.1	100.0
도서벽지	459	96.7	3.3	100.0
취원아동				
전체	545,559	22.2	77.8	100.0
대도시	227,722	11.9	88.1	100.0
중소도시	221,840	21.7	78.3	100.0
농어촌	89,621	45.1	55.9	100.0
도서벽지	6,629	85.5	14.5	100.0

- 농어촌 지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국공립유치원의 높은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유치원 이용률은 낮음.

〈표 III-3-2〉 지역별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비율

단위: %

구분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전체	58.4	55.9	57.1	56.8
유치원	12.2	16.6	18.7	16.5
보육시설	39.1	24.9	26.2	27.9
선교원	0.7	2.9	1.2	1.9
반일제이상학원	5.9	8.3	9.4	8.3
일반학원	6.7	8.5	10.1	8.7
기타	0.11	6.0	3.2	4.1

- 농어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유치원 이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영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점,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음.

〈표 III-3-3〉 영유아별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계
운영시간이 안 맞아서(일간운영시간부족, 장기방학 등	18.8	21.7	21.0
집이 멀어 차를 너무 오래 타서	-	5.7	4.3
집이 먼데 차량운행을 안해서	-	15.1	11.6
비용이 부담되어서	-	4.7	3.6
보호서비스 수준이 마음에 안 들어서	-	7.5	5.8
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6.3	20.8	17.4
아이가 너무 어려서	68.8	14.2	26.8
필요를 못 느껴서	3.1	7.5	6.5
기타	3.1	2.8	2.9
계(수)	100.0(32)	100.0(106)	100.0(138)

- 농어촌 유치원은 원아모집, 차량운행, 종일반교사 부족 등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표 III-3-4〉 농어촌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주)}

단위: %

아동모집	차량운행	종일반 교사부족	납부금 미납	시설낙후	기타
78.8	63.8	47.5	20.0	23.8	12.5

주: 농어촌 유치원 담당 공무원의 응답임.

- 정부는 농어촌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
 - 2004년부터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를 원당 500~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음. 2004년에는 126개원, 2005년에는 1,416개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통학버스 100대를 지원함.
 -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원당 약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원함.
- 지원의 규모면에서 현행 농어촌 육아시설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확대가 필요함.

2) 보육시설

-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국가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높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의 비중이 크고 민간개인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도시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이는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냄.
 - 보육시설은 면보다는 읍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이 거의 없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표 III-3-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계(수)
보육시설수								
전체	5.2	5.2	3.5	44.7	0.2	40.2	1.0	100.0(28,761)
농어촌	6.3	13.9	8.2	45.4	0.0	25.4	0.7	100.0(4,149)
보육정원								
전체	9.9	11.8	5.4	55.7	0.1	15.6	1.5	100.0(1,252,877)
농어촌	7.6	24.4	10.4	48.5	0.0	8.1	1.0	100.0(228,345)

- 전국적으로 볼 때, 아동인구가 있음에도 보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은 총 474개 읍·면에 이르고 이 중 472개가 면지역임. 따라서 면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됨.
- 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읍지역 1개 포함 140개 농어촌 지역임.

〈표 III-3-6〉 보육시설 미설치 및 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2006년)

단위: 개, 명

구분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 지역	
	시·군·구	읍·면		시·군·구	읍·면
		읍·면	아동		
총계	134	474(2)	35,753	83	140(1)
대구	1	1	179	1	1
인천	2	9	703	2	6
울산	1	2	161	-	-
경기	5	9	712	-	-
강원	10	24(1)	1,710	4	5
충북	8	35	2,251	7	11
충남	13	45	4,226	9	12
전북	13	65	4,605	11	19
전남	20	87(1)	7,200	17	30(1)
경북	24	107	7,651	18	29
경남	15	90	6,355	14	27

주:()는 읍지역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특히 영아보육의 비율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III-3-7〉 연령별 보육시설 아동 정원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개인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체								
2세 미만	14.1	10.9	11.6	10.3	11.3	10.8	29.8	11.7
만2세아	21.1	17.4	18.6	17.5	19.3	20.8	32.8	20.8
만3~5세아	61.3	67.6	66.7	64.8	65.8	67.6	35.6	65.3
만6세이상	3.5	4.2	3.2	7.4	3.6	0.8	1.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252,877)	(124,096)	(147,837)	(67,144)	(698,296)	(1,309)	(195,867)	(18,328)
농어촌								
2세 미만	11.6	8.5	10.2	9.7	10.3	9.7	29.6	9.5
만2세아	19.0	16.8	18.1	18.1	17.8	9.7	32.0	18.6
만3~5세아	65.8	71.9	69.4	69.5	67.1	80.6	36.6	71.9
만6세이상	3.5	2.8	2.4	2.7	4.7	0.0	1.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8,345)	(17,369)	(55,618)	(23,733)	(110,711)	(31)	(18,579)	(2,304)

- 국가는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음.
-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대해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의 넓은 운행 면적을 고려하여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은 교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 원아모집과 연령별 정원 준수가 힘든 사항으로 지적됨.

〈표 III-3-8〉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

단위: %

아동모집	차량운행	교사부족	보육료 미납	연령별 정원준수	설치기준 준수	재무회계 규칙준수
45.3	24.4	72.1	23.3	64.0	11.6	4.7

다. 세부 과제

1) 육아시설 접근성의 제고

- 등하원 차량지원 및 안전관리를 강화함.
 - 초등병설유치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율을 제고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내 공동운영을 유도함.
 -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유류비 지원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차량 안전교육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초등병설유치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킴.
 - 종일제 시행 확대와 종일반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방학 중에도 종일제 운영방안을 모색함.
-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에 국공립영아보육시설을 확충함.
 - 「보육서비스 공급 우선 검토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단기간내 확충을 추진함.
 - 초등학교내 교실을 이용하여 영아보육 및 유아 유치원 시간외 보육을 실시함.
 - 교실구조 및 설비를 보육에 적절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농번기 중 영아보육서비스 지원 확충이 필요함.
- 교육·보육 및 지역주민을 위한 육아·가정·건강지원복합센터를 설치함.
 - 질 높은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 방과후 교육, 주민 상담 및 교육기능을 위한 복합센터를 설치·운영함.

- 복합센터 설치 이외에,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기존 자원을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및 가족 전체에 대한 문화, 언어, 부모 교육을 실시함.

2) 비용 지원 확대

- 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5세 무상 교육·보육과 농어민 자녀 특별지원 대상을 농어촌 거주자 전원으로 점차 확대함.
- 농번기 취약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시간제 보육이나 야간 보육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3) 질적 수준 제고

- 농어촌 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함.
- 농어촌 교사 지원을 강화함.
 - 사립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농어촌 근무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함.
 - 교사 재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함.
- 지역내 유치원간, 보육시설간, 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협력을 장려함.
 - 원아 수가 적어서 실시하기 어려운 차량운행, 행사, 현장학습 등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이용보다는,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가정에서도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 파견제도를 도입, 발전시키고 현행 취업모 육아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임.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 가정내 개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내 소규모 보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영리 베이비시터회사가 가정내 보육 틈새를 메워 왔고, 최근에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가정내 보육인력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관리 장치가 없음.
- 가정내 보육을 희망하는 영아 가정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가칭)보육도우미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비영리 단체가 자격을 인증함.
 -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는 일정한 조건 강화를 통해 등록제를 실시, 관리함.
- 정부가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도우미 파견을 확대함.
 - 보육도우미 교육비와 운영비를 보조함.
 - 부모의 이용 비용을 소득별 차등형태로 지원함.
 - 가정내 영아보육 이용층을 확대함.

가. 배경

- 보육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그러나 시설보육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고 시설보육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가정내 보육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아는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 가정보육도 시설보육화되어 있음.
 - 보육선진국들의 경우 가정보육이 공적영역에 포함되어 부모의 소규모 개별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파견보육도 지원하며, 보육제공자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함.
 - 가정내 양육 지원은 가정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장점임.

□ 영아의 부모들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있음.

- 2004년 조사 결과 단독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연령별로 혈연 17.5~21.0%, 비혈연 1.4~3.3%임. 조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I-4-1〉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2004년)

단위: %,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혈연	19.6	21.0	17.5	7.7	3.0	0.4	0.3	9.4
동거조부모	7.0	7.4	8.3	4.3	2.0	0.2	0.3	4.1
비동거조부모	11.2	12.3	7.3	3.2	0.6	0.2	—	4.6
친인척	2.5	2.3	2.6	0.7	0.4	—	—	1.2
비혈연	3.3	3.3	1.4	1.0	—	—	0.3	1.1
(수)	(358)	(391)	(422)	(441)	(508)	(493)	(348)	(2,962)

- 2005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영아 엄마의 경우도 70.9%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며, 9.34%는 가사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보육시설 이용률은 15.3%이었음.

〈표 III-4-2〉 취업모의 영아보육 실태: 실제 보육자(2005년)

단위: %(명)

구분	부모님·친인척	보육시설	가사대리인	육아휴직 후 본인	기타	계(수)
전체	70.9	15.3	9.4	4.0	0.4	100.0(1,357)

〈표 III-4-3〉 영아 모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시간제 보육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상시	매우자주 (주2~3회)	비교적자주 (주1~2회)	가끔 (월1~2번)	매우가끔 (년1~2번)	없음	계(수)
전체	48.5	10.0	9.4	25.1	5.1	1.9	100.0(882)
취업	60.4	9.4	10.2	17.0	3.0	-	100.0(235)
미취업	44.3	10.3	8.7	28.1	5.9	2.6	100.0(643)
모부재	25.0	-	75.0	-	-	-	100.0(4)

- 영아는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48.5%임.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시간제 보육 요구가 다소 높음.
- 존재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하여 비공식성의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필요함.
 - 베이비시터 회사나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NGO에 의한 가정내 서비스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영역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이나 사후관리 등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 가정내 보육은 경제위기 이후 벤처 사업의 하나로 영리 회사가 틈새시장을 찾아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93개 업체가 본사 또는 가맹 점 형태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업체는 약 35%정도가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고 있음.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법으로 인적·물적·재정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임.
- 여성가족부가 2007년 4월부터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월 120시간 한정의 시간제 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음.
 - 활동하는 돌보미는 1,300여명이고, 도우미를 연계한 가정은 약 5,000가정임.
 -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고, 차상위이하 계층 가정에는 요금의 80%를 지원함.
 -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50% 이상이 맞벌이 가정이고, 일반형보다는 저소득층의 저렴형이 더 많아서 아이돌보미는 저소득층 양육 지원 기능이 강함.

〈표 III-4-4〉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유형

단위: 건

가정 유형	한부모	조손 가족	장애인 부모가족	장애아 동양육 가정	결혼 이민자 가족	맞벌이 가족	일반 가정	기타	계
가정 수 누계	761	43	47	74	169	2,450	1,114	534	5,276
건수 누계	6,958	482	513	701	1,494	21,176	8,098	3,298	42,720

〈표 III-4-5〉 아이돌보미 이용 유형

단위: 건

월별	평일			주말			계
	저렴형	일반형	계	저렴형	일반형	계	
누계	14,168	12,541	26,711	3,366	1,033	4,378	31,089

- 여러 민간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정내 아이 돌보는 인력 파견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40시간의 육아돌보미 교육을 위탁 실시함.
 - 노동부가 YMCA에 시간제 공간 및 파견보육인 아가야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위탁하여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을 하고 있음.
- 가정내 보육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하고, 사업들이 산발적이며, 보육인력 관리나 내용 등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어려움.
 - 가정내 보육 제공을 질 높은 일자리로서 근로자성을 보호하기 어려움.

다. 세부 과제

- 가정내 보육도우미는 근로자성 보호와 자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내

보육도우미 파견제도를 도입함.

- 영리 베이비시터사업체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고, 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함.

1) (가칭)보육도우미 자격

- 보육도우미는 20세 이상으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하고 관련 단체가 인증함.
 -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별도의 실습으로 구성함. 교육내용은 영아발달,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기술, 위생과 질병관리, 식생활 관리 등,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참조하되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함.
 -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
- 보육도우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을 받음.

2) 보육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가정보육도우미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함.
 -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함.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우미의 집도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도우미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함.
- 보육도우미에게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작성, 보고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관리를 도모함.
- 보육도우미와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이 비용은 정부가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함. 아동가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이외에, 도우미를 위한 활동지침 및 아동을 위한 도우미와 부모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도우미와 부모가 지키도록 하여 도우미와 아동 모두의 안전을 보호함.

3)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주체

-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주체는 정부 및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사업체로,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 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유사 지역사회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위탁 사업체로 지정함.
-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보편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적어도 동 단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선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에 1개소를 목표로 함.

4) 비용 지원

-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이 추진함.
 - 정부가 실시하는 보육도우미 위탁 사업체에 최소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함. 보육도우미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료와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함.
 - 보육도우미 이용 비용을 차등보육료 형태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정부가 지원함. 차상위 이하 소득계층 아동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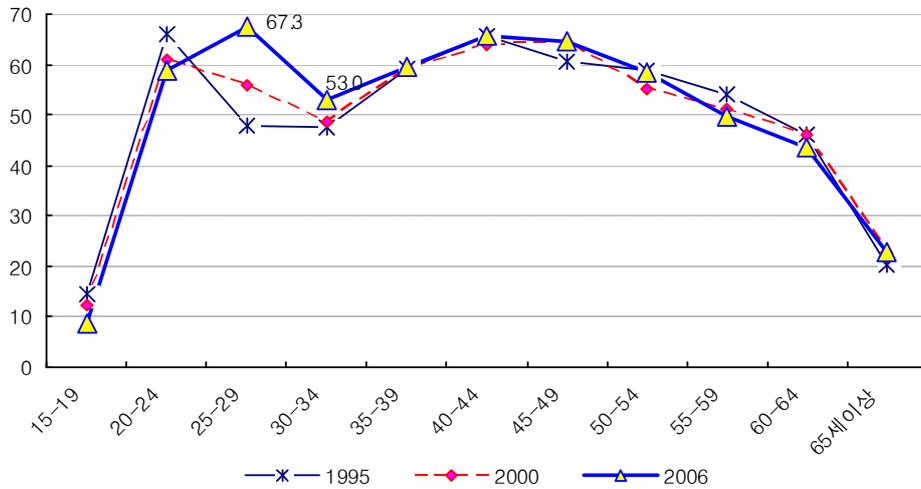
-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현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출 뿐 아니라 가임여성의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출산·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제도 등 모성보호 제도와 직장보육시설 설치, 세제혜택 등의 관련 제도가 제·개정되었으나 실행률은 저조함. 따라서 이들 제도를 강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모 자녀 중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보다는 개인양육지원을 선호하므로 일반 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영아 보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아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실행 중인 각종 제도를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지원을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음.
 - 모성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활성화
 -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증진
 - 취업모 가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존 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가. 배경

- 지난 20년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0만명(1985년)에서 1,000만명(2006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1.9%(1985년)에서 50.2%(2006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취업모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지속적인 여성경제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성들에 비해서 여전히 16% 포인트

가량이 낮은 상태임.

-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30대 초반에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은 취업한 어머니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그림 III-5-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각 년도)

-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남성취업자에 비해 낮은 편임.
-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편임.

〈표 III-5-1〉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2~2006년)

단위: %

	2002년		2004년		2006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여성	66.6	33.4	56.3	43.7	57.3	42.7
남성	76.5	23.5	67.8	32.2	69.6	30.4

- 육아, 가사 등 가정의 양립 부담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남성근로자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혼 여성이라도 육아·가사 등의 요인이 없다면 정규직 취업을 원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표 III-5-2〉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1~4인	25.6	7.8	24.9	8.3	23.3	7.1
5~9인	60.2	22.4	59.6	23.4	54.6	21.2
10~29인	80.4	39.6	81.1	41.1	70.3	38.1
30~99인	92.2	58.6	92.9	60.8	71.9	55.0
100~299인	94.5	74.7	94.9	75.2	79.1	70.5
300인 이상	98.9	79.6	99.0	79.9	82.3	73.9

- 여성의 학력 수준의 증가와 노동지위의 불안정, 이와 맞물린 맞벌이의 필요는 여성에게 취업과 가정(육아)사이에서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욕구가 출산·육아기에도 포기되지 않고 일-가정이 성공적으로 양립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나. 현황

1) 모성보호

□ 여성취업자의 일과 가정(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 휴직제도가 있음.

※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해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근로자가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할 수 있도록 2001년에 도입된 제도임.

－ 육아휴직제도 도입이후 육아휴직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0월 현재 17,390명이 이용하였음.

〈표 III-5-3〉 육아휴직 사용현황(2001~2007년)

단위: 명, 백만원

기간	지급액	인원			월급여액	평균 육아휴직 일수	
		전체	여성	남성		여	남
2001	5	25	23	2	20만원	185일	293일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178일	146일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195일	158일
2004	20,803	9,303	9,122	181	40만원	209일	186일
2005	28,242	10,700	10,492	208	40만원	211일	185일
2006	34,521	13,672	13,442	230	50만원	216일	191일
2007	48,538	17,390	17,132	258	50만원	-	-

－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최근 제도가 개선 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사용 여성은 분만을 경험한 여성 중 22.5%에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한 2006년 현재 28%에 불과해 두 가지 양립지원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저조한 상황임.

〈표 III-5-4〉 분만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추이

단위: 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만인원(A)	44,649	48,348	50,837	60,856
산전후 휴가급여(B)	32,113	38,541	41,104	48,972
육아휴직 급여(C)	6,816	9,304	10,700	13,67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산전후 휴가급여 사용자 비율(B/A)	72.0	79.7	80.9	80.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육아휴직 급여 사용자 비율(C/A)	15.3	19.2	21.0	22.5
산전후 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C/B)	21	24	26	28

- 모성보호 관련 제도의 이용률 저조는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제도 이용의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과 모성보호에 비우호적인 사회기업 문화에 상당부분 기인함.
 - 2006년 현재 여성 임금 근로자 중 44.5%만이 고용보험 가입자임. 특히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의 상근직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 및 무급가족업에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저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으로 인한 기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부정적 의식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야 함.
- 현재 산전후 휴가를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기업주가 산전후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1년 이후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고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가 존재함.

2) 직장 보육시설

- 여성근로자의 육아지원 제도 중 하나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민간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설치 및 운영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간접지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는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7%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298개소로 14,53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즉, 전체 29,233개 보육시설 중 1.0%가 직장보육시설이고, 전체 보육 아동 1,040,361명 중 1.4%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이 과반수에 해당함.

〈표 III-5-5〉 기업규모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 현황(2006년)

단위: %

구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	근로자 500인 이상~1,000인 미만	근로자 1,000인 이상
비율	38%	45%	52%

- 직장보육시설의 낮은 설치율은 직장보육관련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임.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공립학교에서도 설치 비율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III-5-6〉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률(2006년)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합 계	775(100.0)	365(47.0)	199(26.0)	132(17.0)	34(4.0)	410(53.0)
국가기관	42(100.0)	26(62.0)	25(60.0)	-	1(2.0)	16(38.0)
지자체	133(100.0)	131(99.0)	57(43.0)	73(55.0)	1(1.0)	2(1.0)
학교	69(100.0)	22(32.0)	10(15.0)	12(17.0)	- (0.0)	47(68.0)
민간(공사 포함)	531(100.0)	186(35.0)	107(20.0)	47(9.0)	32(6.0)	345(65.0)

3) 영아 보육 서비스

- 육아휴직 등 취업모 자신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육시설 등 대리양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그런데, 자녀가 영아인 경우 보육 시설 이용은 선호되는 방식이 아님.
-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모의 취업여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25.8%를 포함하여 28.5%가 기관을 이용하고 혈연 61.9%, 비혈연 9.6%로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어, 보육시설은 취업모 영아 양육지원에 한계가 있음.

〈표 III-5-7〉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2004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반일제이상 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일반 학원	0.3	0.1	-	0.2	15.1	13.8	11.8	14.3
기타	1.3	3.1	-	2.6	4.1	6.0	-	5.1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친인척	7.0	1.6	-	2.9	3.8	0.7	11.7	2.1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기관이 멀거나 기관에 대한 불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됨.

〈표 III-5-8〉 취업모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2007년)

단위: %(명)

구분	질병·장애	기관이 멀	양육자 있음	비용부담	기관불신	계(수)	X ² (df)
전체	0.2	42.4	20.3	11.0	26.0	100.0(516)	
연령							
만 0세	0.5	37.8	17.1	11.9	32.6	100.0(193)	
만 1세	-	51.1	20.6	13.3	15.0	100.0(180)	24.8(8)**
만 2세	-	37.8	24.5	7.0	30.8	100.0(143)	

4) 세제 지원

- 육아를 위한 세제 지원은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며, 그 외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자녀 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실시되고 있음.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내에서 비과세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 지원 중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있는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에 취업모가 포함된 맞벌이 가정의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없어서 취업모 가정을 위한 차별화된 세제 지원으로 볼 수 없음.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하므로 대리양육 비용이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또한 취업모 가정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다. 세부 과제

-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각종 세제혜택 등 현재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는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함. 여성취업자의 비정규직화는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바 이들을 함께 지원할 방안 마련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 방안을 모색함.
- 영아가 있는 취업모가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함.
- 취업모의 소득이 가정의 소득원이 아니라 주소득원인 경우에 대한 부가적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

1)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지속적 확대

-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모성보호 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성화시킴.
- 이용 형태의 유연성 제고(시간제 육아휴직,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근로자를 위해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시간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육아휴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이 일정 연령에 이르는 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세부적 내용을 취업모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재 일률적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급여 대체율이 너무 낮아 저소득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야 함.
 -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최저선을 책정하고 그 이상의 급여를 소득급간에 따라 저소득층에 높은 비율의 급여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급여체계의 변경이 필요함.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시 기업주 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에 있어 근로자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의 활용률 제고
 - 우선 지원 대상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

- 현재 근로자 1인당 매월 20만원~5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인상하거나 육아휴직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사용주에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시키는 방안 필요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안되었던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관련 기업 인센티브,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과 같은 직장문화 개선 관련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킴.

2)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정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설치를 망설이는 미설치 사업장,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각 사업장의 규모와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으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무조건적 시설 설치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음.
 -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이 시행하는 보육시설 위탁 또는 수당 지원 또한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전반적인 직장보육 서비스 의무이행률을 제고하도록 함.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수당지급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권장 수준에 불과하므로 법을 개정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하도록 함.
-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영아가 있는 취업모를 위해 질높은 영아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증진시킴.
 - 영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믿을만한 기관의 부족 때문에 시설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시설의 질적 제고와 양적 확대가 동시에 요구됨. 이를 위해 영아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영아반 구성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함.

-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 주변의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보육도우미 파견 제도를 도입, 취업모의 가정내 영아 보육을 지원함.

3) 세제 지원 확대

-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마련함.
 -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시간을 수급요건으로 하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마련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소득보전을 가능케 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함.
 -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혜택은 월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보육수당 전액을 비과세하도록 함.

4) 모성보호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취업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각종 제도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이에 따라 취업 여성 중 자영업 종사자, 무급가족업 종사자, 임시직 종사자, 일용직 종사자는 이들 지원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여성으로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함.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등을 완화하여야 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가 신청시 1년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완화되어함.
 - 비정규직 여성이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계약기간이 끝날시 계약기간 종료시

점부터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권을 출산시점의 계약기간내 존재여부에만 의존하도록 함.

- 자영업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휴가 및 휴직 개념의 적용이 곤란한 취업
모에 대해서는 가구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보육도우미 이용 우선권 제공 등 차
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형은, 1)지역내 거점센터로서 여타 시설의 모형 기능을 수행할 국공립 시설과 2)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3)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3개 유형으로 재개념화하여, 사립·민간 육아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그 밖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함.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 한 나라의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수준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확충 성과는 가시적이지 못함.
- 공교육·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시설의 분담률을 이용 아동 기준 30% 이상으로 제고하고,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취약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및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가. 배경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분담률은 교육·보육의 공공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특히, 유아교육·보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공립시설을 확보하여, 국공립 대 민간의 적절한 수준의 원아 분담 비율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국공립시설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대기 아동도 많아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및 민간시설의 반대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이 미흡한 실정임.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이 육아지원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과 민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임.
- 국공립기관은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 모형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보편적 교육·보육프로그램 및 표준교육·보육 프로그램 외에도 아동 및 지역 특성화프로그램, 취약교육·보육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된 추가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국공립시설의 확충은 육아와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 중 하나임.

- 「새로마지플랜 2010」(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 「새싹플랜」(2006. 7)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와 이용 아동수를 보육시설수의 약 10%, 아동수의 약 20%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함.

나. 현황

□ 최근 5년간 유치원 수와 원아 수는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공립유치원 수와 원아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유치원 수는 2002년 8,308개원에서 2006년 8,290개원으로 총 18개원 감소하였음.
 - 국공립유치원은 241개원 증가, 사립유치원은 259개원 감소하였음.
 - 단, 사립유치원의 학급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4,460개로 전체 유치원의 53.7%를 차지함.
- 유치원아수는 2002년 550,150명에서 2006년 545,812명으로 총 4,338명 감소하였음.
 - 국공립유치원아 수는 1,692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6,030명이 감소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121,324명으로 전체 원아 수의 22.2%를 차지함.

〈표 III-6-1〉 연도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 명

연도	유치원 수(학급수)			유치원 원아 수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2002	8,308(21,493)	4,240(6,012)	4,089(15,481)	550,150	119,632	430,518
2003	8,292(21,839)	4,284(6,122)	4,008(15,717)	546,531	121,322	425,209
2004	8,246(22,046)	4,328(6,266)	3,918(15,780)	541,713	123,906	417,807
2005	8,275(22,409)	4,412(6,451)	3,863(15,958)	541,603	124,283	417,320
2006	8,290(23,010)	4,460(6,588)	3,830(16,422)	545,812	121,324	424,488

□ 최근 5년간 보육시설 수와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변화 추이

- 보육시설 수는 2002년 22,147개소에서 2006년 29,233개소로, 총 7,086개소 증가하였음.
 - 국공립보육시설은 313개소 증가, 민간보육시설은 6,773개소 증가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1,643개소)은 전체 보육시설의 5.6%에 지나지 않음.
-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2002년 800,991명에서 2006년 1,040,361명으로, 총 239,370명 증가하였음.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1,306명 증가,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228,064명 증가하였음.
 - 2006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수(114,657명)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의 11.0% 수준임.

〈표 III-6-2〉 연도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증감 현황(2002~2006년)

단위: 개소, 명

연도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등
2002	22,147	1,330	12,679	199	7,939	800,991	103,351	597,971	8,730	90,939
2003	24,142	1,329	13,644	236	8,933	858,345	103,474	640,545	10,391	103,935
2004	26,903	1,349	14,728	243	10,583	930,252	107,335	691,343	11,787	119,787
2005	28,367	1,473	15,243	263	11,388	989,390	111,911	734,554	12,985	129,940
2006	29,233	1,643	15,405	298	11,887	1,040,361	114,657	761,688	14,538	149,478

다. 세부 과제

1)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및 단설유치원 설립

○ 국공립유치원 원아수 분담비율 22.2% → 30%이상으로 확충

【병설유치원 확대】

- 1~2학급 3,990개의 약 30%인 1,200개 → 2~3학급으로 증설 확대
-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신설 → 약 800개 학급 증설 확대
- 총 2,000개 학급 증가(학급당 원아수 평균 20명 기준, 원아수 40,000명 증원 예상)
병설유치원아수 분담비율 약 7% 이상 증가 예상
※ 병설유치원(4,374개원)의 91%가 1~2학급 규모(1학급: 3,007개원, 2학급: 983개원)

【단설유치원 설립】

- 매년 12개원씩 설립, 향후 5년간 60개원 추가 설립
- 총 60개원 증가(단설유치원 평균 원아수 150명 기준, 원아수 9,000명 증원 예상)
단설유치원아수 분담비율 약 1.5% 이상 증가 예상
※ 최근 단설유치원 매해 10여개원씩 증가하는 추세와 평균 원아수 감안

□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1~2 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을 2~3 학급 이상으로 확대함.

- 대도시 및 신규택지개발지역 등 유아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함.
-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
-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유아의 교육기회를 제공 및 확대함.
- 종일제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의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 기회를 확대함.

□ 유치원 부족 지역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 우선 설립함.

- 공급률과 이용률의 불균형으로, 유치원 추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중 저소득밀집지역이거나 택지개발지역에 설립함.
* 단, 지역내 사립유치원 및 타 육아지원기관의 설치 현황을 감안함.

- 적정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2010년까지 100% 종일제 운영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등 지역내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함.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분담비율 11% → 30%이상으로 확충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114,657명을 약 312,000명으로 확대함.
 - 증원 예상 아동 약 19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평균 아동수 80명 기준) 약 2,400개소 증설 필요

-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확충
- 초기 설치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강화
 - 신축비 지원단가 인상 및 국고보조율 30%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중앙정부가 직접 신축 조직 설치 및 비용 전액 부담 후, 지역에 무상 임대 및 위탁 운영을 의뢰함.
- 신축비 지원 없이 건물 확보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를 통한 확충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함.
 -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우체국,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함.

3)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선도적 기능 강화

- 장애아 통합교육 서비스 우선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 일반학급과의 연계 통합교육을 활성화함.

- 포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서비스 제공
 -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교육·보육 격차 해소 및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한 포괄적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내 거점 센터로서 운영 모형 기능 수행
 - 단설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내 소규모 기관이나 민간시설에 운영 모형을 제공하고, 거점 센터 역할을 수행함.
 -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표준적인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지역내 육아지원센터로서 가정·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 영유아 육아지원 재정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재정 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임.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공인, 그리고 공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제고될 수 있음.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질적 수준을 공인하고,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적극 유도함.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해 행정전산화를 확대·추진하고,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함.

가. 배경

- 유아교육과 보육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한해 약 3조원에 이룸.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기본보조금 제도가 채택된다면 앞으로 재정지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공적 재정이 지원되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제고는 국가 지원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임.
-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의존도가 높으므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민간기관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임.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가 재정 및 교육·보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그 운영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나. 현황

1) 사립유치원

-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06년 현재 사립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 수의 46.2%이고 원아수 비율로는 78.8%를 차지함.

〈표 III-7-1〉 유치원 설치 현황(2006년)

단위: 개소, %,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기관	원아	기관	원아	기관	원아
기관수	4,460	121,071	3,830	424,488	8,290	545,812
비율	53.8	22.2	46.2	78.8	100.0	100.0

- 전체적으로 볼 때 예·결산을 수립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비율은 낮고, 24%의 유치원은 교육비 수입 관리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음.
 - ※ 사립유치원 공공성 수행지표로는 교육비를 수령하는 방법, 예·결산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정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있음.
 - 200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의 75.8%가 은행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교육비 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24.2%는 교사나 원장이 직접 수령하고 있음.
 - 예·결산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1.6%로 나타남. 그러나 대다수가 형식적인 서류상의 예·결산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결산 수립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사립유치원의 54.2%가 예·결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9.3%가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표 III-7-2〉 유치원 공공성 지표(2006년)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교육비 수령 방법		
계	690	100.0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167	24.2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166	24.0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338	49.0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19	2.8
예·결산 수립 방법		
계	448	100.0
금전출납부 이용	378	84.4
전문프로그램 이용	37	8.3
회계전문가 의뢰	26	5.8
예·결산 없음	7	1.6
예·결산 공개여부		
계	476	100.0
공개	218	45.8
비공개	258	54.2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계	467	100.0
설치	50	10.7
비설치	417	89.3

- 국가차원의 관리제도로 사립유치원은 연1~2회 정도의 교육청 장학지도와 2~3년마다의 시설·설비에 관한 관리지도가 있음.
- 현재 유치원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시범실시 중이며 내년이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임. 앞으로 장학 및 시설·설비 관리지도와 평가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2) 민간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다수를 차지함.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민간개인, 가정 등)보육시설은 84.5%에 이룸.

〈표 III-7-3〉 보육시설 설치 현황(2006년)

단위: 개소,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개인	법인외 단체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아동수	계
기관수	1,643	12,864	1,066	1,475	298	11,828	59	990,069	29,233
비율	5.6	44.0	3.6	5.0	1.0	40.5	0.2		100.0

- 사립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한 공공성 수행 기준의 잣대로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수행정도는 낮은 편임.
 - 민간보육시설의 32.2%가 보육료를 교사나 원장이 직접 수령 등 수입관리가 투명하지 않음.
 - 예·결산을 수립하는 경우는 78.6%이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는 23.7%에 불과함.
 -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비율은 31.3% 임.
- 민간보육시설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관리지도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 평가인증제가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정부는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보육시설, 지자체, 여성가족부를 연결하는 표준보육행정시스템(e-보육)을 구축하였음.
 - 2007년 현재 전체 보육시설이 등록을 마친 상태임.
 - 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원아·종사자·시설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고보조금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였음.

〈표 III-7-4〉 보육시설 공공성 지표(2006년)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비율
교육비 수령 방법		
계	629	100.0
교사 혹은 원장이 직접 수령	206	32.8
은행의 지로를 통한 수령	78	12.4
자동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통한 수령	328	52.1
신용카드를 통한 수령	17	2.7
예·결산 수립 방법		
계	420	100.0
금전출납부 이용	228	54.3
전문프로그램 이용	71	16.9
회계전문가 의뢰	31	7.4
예·결산 없음	90	21.4
예·결산 공개여부		
계	434	100.0
공개	103	23.7
비공개	331	76.3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계	403	100.0
설치	126	31.3
비설치	277	68.7

다. 세부 과제

1)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지원

- 유치원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
 - 유치원평가제도의 전면 도입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 교사처우개선비, 종일제 지원비 등의 지원여부를 결정함.
-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함.
 - 현행 학교법인 조건을 완화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표 III-7-5〉 법인화에 대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

단위: 명, %			
구분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48	171	419
비율	59.2	40.8	100.0

- 사립유치원 운영의 재무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 차원의 행정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예·결산 공개 의무화를 추진함.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 평가인증의 결과와 재정 지원 연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통과 여부에 따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농어촌), 인건비(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 기본보조금 지원 또한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보육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 전환을 유도함.
 - 법인 출연금 등에서 현행 사회복지 법인 요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법인전환을 유도함.

〈표 III-7-6〉 보육법인 활성화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장의 의견

단위: 명, %			
	찬성	반대	계
의견수	226	103	331
비율	68.9	31.1	100.0

- 투명한 행정·재정 운영을 위해 예·결산 회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개토록 함.
 - 2007년 구축된 보육행정 전산화 체제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수시 점검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결산 공개를 유도함.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여타의 정부미지원 자율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임.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 정부는 2005년,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과 동시에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기로 하고, 민간시설 이용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 중산층 이상 부모의 욕구충족 및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가 기대됨.
- 소득계층별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별활동의 확대로 부모 부담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시기적으로 가격규제 예외 육아시설의 견제 기능을 하는 공공보육시설이 일정 부분 확충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적용 시설 수를 조정하고 비용 담합을 경계하며, 특별활동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모 부담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가격규제 예외시설도 가격 이외에는 제 기준을 준수시켜, 보편적 교육과 보육과정을 영유아들이 경험하게 함.

가. 배경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 도입이 논의된 배경은 이들 기관의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과 공적재정 투입의 불공평성에 있음.
 -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정부 재정 투입의 차이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 이용 아동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기초함.
- 2006년부터 기존 영아보육지원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가격규제 예외시설 도입을 검토함.
 -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국가 재정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고급화된 서비스를 희망하는 계층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는 시각에서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두자는 것임.

-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비는 1985년에 이미 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교육비 자율화가 완전히 적용된 것은 아님. 따라서 유치원의 자율적 선택으로 가격규제와 기본보조금 수용이 가능함.

나. 현황

- 정부는 2006년부터 기존 영아보육지원을 영아 기본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원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은 대전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전남 해남군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영아 기본보조금은 대상 시설 중 약 85%의 시설에 지원되고 있으며, 기본보조금 액수는 0세아 292,000원, 만1세아 134,000원, 만2세아 86,000원임. 이로 인하여 부모 부담 비용의 국공립과 민간시설별 차이 문제는 해소됨.
 - 유아 기본보조금은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은 42,000원임.
-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논의된 정책이 가격규제 예외 시설인데,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도시에서는 30% 수준으로 높고, 읍·면에서는 8% 수준으로 낮게 조사되었음.
 - 그러나 부모들은 자율화된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6.4% 수준임.

〈표 III-8-1〉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 시설장의 보육료 운영 방향

단위: %(개소)

구분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 상한선	보육료 자율화	상한선 이하	잘 모름	계(수)	기본보 조금 + 상한선	보육료 자율화	상한선 이하	잘 모름	계(수)
대전 서구	66.7	26.5	2.0	4.9	100.0(102)	59.3	31.4	2.3	7.0	100.0(172)
경기도 평택시	53.6	35.2	4.0	7.2	100.0(124)	68.1	19.1	6.4	6.4	100.0(45)
전남 해남군	83.3	8.3	-	8.3	100.0(12)	66.7	-	16.7	16.7	100.0(6)

-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은 2007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과 더불어 도입하고자 하였던 가격규제 예외 시설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 쟁점

보육료 자율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 찬성 입장

- 보육료가 자율화된 서비스로 고가의 질 높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산층 이상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킴.
- 보육사업으로 이익이 창출되게 함으로서 대규모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전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함.
- 고소득계층 자녀에게 정부가 보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앴.

○ 반대 입장

-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부모와 자녀가 좌절 느끼지 않는 여건과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견제할 기본 공공 인프라를 확보한 후에 민간시설에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담합 등에 의한 보육료·교육비만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제한된 보육료 이외에 추가비용 증가로 정부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은 증가하고 정부 지원의 체감도는 낮을 것을 우려함.
- 가격규제 예외 시설이 지역에서 일정부분을 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실제로 제한이 가능한 지가 문제임.

라. 세부 과제

1) 개념 및 적용 방법

가격규제 예외 시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시설에 차등보육료 이외에 일체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임.

- 가격규제 예외는 영아와 유아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 단위로 실시함. 이 경우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은 영아보육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가격규제 예외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민간보육시설이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분리됨.

2) 실시 시기

-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30%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시·군·구 신고제로 가격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는 보육시설을 허용함.
 - 기본 공공 인프라 확립 없이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임.
 - 가격규제 예외 시설에 대한 독점적 제어 수단으로 작동함.
- 민간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과 유사한 수준이 되어야 함.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현행 소득별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공립시설과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지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의 육아지원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함.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육아지원 재정을 투입하고, 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심으로 육아시설 이용 비용을 차등 지원하였음.
-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는 기본보조금지원제도가 도입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 지원되고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는 시범사업 중임.
 -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부분 실시 중임.
- 증가하는 육아지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적 지원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현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하여 소득계층간에 보다 형평성 있고 정교한 차등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함.
 -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부모와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방식을 투명화해서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증진시킴.
 -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로 시설별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취약보육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육아지원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한시적 목적세 도입을 적극 검토함.

가. 배경

- 최근에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이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그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였으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상당부분은 주로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사립·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전반적으로 낮은 육아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립·민간 육아시

설에 기본보조금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음.

- 우리나라 육아시설은 사립·민간시설이 다수이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함. 특히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시설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준설비 면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많고 민간시설 교사의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 민간 시설 서비스 수준이 낮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불공정한 재정 지원에 있음.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 주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확보되는 교육·보육 비용, 부모 부담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민간 육아지원기관의 낮은 서비스 수준의 원인이 됨.
-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용 기관 유형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육아시설 이용 비용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지원책은 계속 확대 추진하고 시설별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거나 효율성이 없는 지원책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나. 현황

1) 시설별 지원

-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됨.
-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함.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시설규모별로는 정원 20명 이상인 경우 원장 인건비가 지원됨.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은 프로그램별로 인건비를 지원함. 휴일보육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하고 있음.

2) 육아기관 이용료 아동별 지원

- 육아 비용 지원은 만5세아 무상, 차등보육료·교육비,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구분됨.
- 만5세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아동은 2006년 기준으로 무상교육은 145,809명으로 아동의 50% 수준이고, 보육은 141,600명으로 보육아동의 88% 수준임.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아동은 72만명에 달함.
 - 3~4세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차등교육비 지원 아동은 2006년도에 만3·4세아 162,000명으로 아동 비율로는 65%임.
 - 2006년 12월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은 55만 6,643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2%임.

〈표 III-9-1〉 보육료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총계
전체	223,700 (63.9)	442,943 (64.2)	666,643 (64.1)
차등지원	186,655 (53.3)	277,212 (56.4)	463,867 (44.6)
두자녀	37,045 (10.6)	26,700 (3.9)	63,745 (6.1)
만5세아	- -	139,031 (70.0)	139,031 (13.4)

주: 만5세아의 비율은 만5세아 대비 비율임.

〈표 III-9-2〉 유아교육비 지원 아동수(2006년)

단위: 명, %

구분	아동수	해당 원아 대비 비율
전체	317,000	58.7
차등지원	162,000	65.2
두자녀	10,000	1.8
만5세아	145,809	50.2

□ 차등교육비·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와 교육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130%까지 지원할 예정임.

〈표 III-9-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 기본보조금은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연령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준 보육비용이나 교육비용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 수준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교육비용과 부모 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임.

- 영아는 그동안 지원하던 영아지원을 기본보조금으로 개념화하고 금액도 확대 하여 2006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유아는 시범사업 중임.

〈표 III-9-4〉 유아 민간개인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2007. 9)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시설수	유아수	시설수	유아수	시설수	유아수
대전 서구						
대상 시설	369	8,347	109	4,705	260	3,642
지원 시설	121	2,963	75	2,684	46	279
경기도 평택시						
대상 시설	161	4,975	132	4,563	29	412
지원 시설	29	1,623	28	1,613	1	10
전남 해남군						
대상 시설	19	569	12	536	7	33
지원 시설	9	452	9	452	0	0

- 보육시설은 총 150개 시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유치원은 6개 유치원이 참여하였고 최근에 평택시에서 30개 유치원이 추가하기로 참여하였음.
-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모 부담도 미지원시설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07년에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 모두 월 32,000원의 보육료 감소 효과가 있음.

〈표 III-9-5〉 평택시 보육료 상한액: 유아 기본보조금 지급 전후(2006, 2007년)

단위: 원

구 분	기본보조금 지원시설		기본보조금 미지원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006				
기존수납상한액(A)	210,000	241,000	210,000	241,000
변경수납상한액(B)	180,000	205,000	210,000	241,000
차이(B-A)	▽ 30,000	▽ 36,000	0	0
2007				
기존수납상한액(A)	230,000	256,000	230,000	256,000
변경수납상한액(B)	198,000	224,000	230,000	256,000
차이(B-A)	▽ 32,000	▽ 32,000	0	0

- 기본보조금은 부모 부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님. 특히 보육 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예산

- 중앙과 지방의 유아교육과 보육 총 예산은 2007년 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됨.
 - 보육 국고 지원예산이 약 1조원이고, 유아교육예산은 국고지원 사업만 2,100억 원임.
- 예산은 일반회계로 충당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은 서울은 20:80, 그 이외는 50:50임.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재정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60:40, 50:50, 40:60로 세분화 될 예정임.

〈표 III-9-6〉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지원사업 세부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총계	7,913	10,434
• 종사자 인건비	2,030	2,472
•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49	138
• 기본보조금 지원	942	1,355
• 저소득층차등보육료	2,733	4,090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284	1,303
• 장애아 무상보육료	277	324
• 두자녀이상 보육료	91	219
• 보육시설 확충 등	224	332
• 보육시설환경개선	119	85
• 보육시설평가인증	16	74
•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등 기타사업	38	41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10	2

〈표 III-9-7〉 2007년도 교육인적지원부 유아교육지원 세부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총계	1,996	2,138
• 만5세아 무상교육비	1,168	1,282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775	751
• 두자녀이상 교육비	28	45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	33
• 유치원평가	-	2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20	20
• 학급자원봉사훈련	3	3
• 유아교육자료개발	1	1
• 유아교육홍보강화	1	1

주: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 예산은 제외되었음. 국·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비와 시설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월 11만원의 담임수당 등임.

다. 쟁점

□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시설별 지원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낮추고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공공 육아지원기관에는 어느 정도 시설별 지원으로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인정됨.
- 아동별 지원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정보의 대칭성과 선택의 대상이 다양성을 전제로 함. 주로 민간이 공급하는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채택됨.

- 부모의 보육 비용에 대한 보편적지원과 차등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보편적 지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까지 지원하므로 예산이 낭비요인이 있고, 소득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보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편적 지원은 불가피함.
 - 차등적 지원은 소득계층별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복지적 접근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고,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시킴.

라. 세부 과제

1)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체계 보완

- 현행 차등 교육비·보육료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정부의 소득과약 능력을 제고하여 소득계층간에 보다 형평성 있고 정교한 차등 비용 지원체계를 구축함.

2) 보편적 지원의 발전 확대

-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 부모와 아동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육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증진시킴.

2)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체계 유지

-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공공보육시설로 시설별 지원 수준을 유지함.
-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취약보육 등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4) 재원 확보

-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예로 스웨덴은 25년간 보육세를 거두었음.
-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분담률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감안, 차등화 함.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육아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포함한 보조인력 등, 전일제 또는 시간제 지원인력의 수급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함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수요자들에게 희망하는 기관 선택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들에게는 스스로 교육·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유치원평가는 2007년도 시범평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됨. 유치원평가는 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하여 유치원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도 시범 적용을 거친 후 2006년도부터 전면 도입되었으며, 시행 3년째를 맞아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정착되고 그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에 있음.
- 유치원평가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처음 도입하는 평가(인증)제도로 현장의 이해와 참여 독려가 정책성공의 중요 요소임.
 - － 기존의 장학/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과 증진
 - － 정부의 예산지원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관들의 참여 격려
 - － 유치원평가/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육아지원 서비스의 수준 제고

가. 배경

1) 유치원평가제도

- 정부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치원이 학교로서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유치원평가제도를 도입함.
 - － 나아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유아교육진흥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학부모들에게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정보 제공으로 기관 선택을 지원함.

- 유치원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유치원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정부는 유치원 현장 실태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유아교육공교육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임.
 - 유치원은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학지도와 함께 기관 운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임.
 - 학부모는 바람직한 유아교육 특성이 반영된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기관 선택권을 보장받게 될 것임.
 - 유아는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적자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서비스 수준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서비스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음.
 - ※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현장을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서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개별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평가인증 참여신청을 전제로, 자체점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게 됨. 또한 현장관찰 및 전문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보육시설의 현 수준을 평가하게 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됨.
 -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함.
- 사립유치원 중 유치원평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유치원은 57.0%,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설은 56.4%로 나타남.

- 부모들 역시 유치원, 보육시설 선택 시 환경구성, 교육·보육 프로그램, 원장/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성 등을 중요 선택요인으로 보고 있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고 도출 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1) 유치원평가제도

- 2007년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임. 시범운영에서는 전국의 유치원 8,290개원 중 100개원이 참여하고 있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각각 50개원 총 100개원임.

〈표 III-10-1〉 시범평가 참여 유치원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지역	공립	사립	계
서울, 경기	10	10	2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9	39	78
제주도	1	1	2
총계	50	50	100

-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 기본정책 수립, 국가 공통지표 개발, 평가위원 연수 등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함.
 - 평가방법 : 유아교육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유치원의 자체평가,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종합하여, 심의평가함. 서면평가는 유치원 교육계획서,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함.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평가지표 : 4개 영역 15개 지표 29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을 중

심으로 유치원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평가하게 됨.

- 4개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환경, 유아의 건강·안전, 운영관리 임.
- 평가주기 : 3년으로 평가 1주기는 2007년도 시범사업 이후 2008년도부터 2010년임. 1주기에는 사립유치원의 80%가 평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치원평가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모든 유치원은 3년 주기로 1회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임.

〈표 III-10-2〉 유치원평가 대상기관 수(2008~2010년)

단위: 개원

구 분	전체	2007(시범)	2008	2009	2010
계	8,290	100	2,470	2,470	2,470
국공립	4,460	50	1,470	1,470	1,470
사 립	3,830	50	1,000	1,000	1,000

주: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연도별 평가 참여 유치원 수는 변동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유치원평가결과를 부모에게 정보 제공
 - 유아교육의 질 제고와 경영 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유치원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도 처음 시범운영이 실시된 이후 제도가 도입되었음. 2007년 10월 말 현재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11,709개소로 총 보육시설 29,233개소의 40.6%임.
- 참여신청 시설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91.1%, 법인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121.8%²⁾,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32.2%, 가정보육시설은 총수 대비 33.2%로 민간개인보육시설이 가장 낮게 나타남.

2) 현재 종교법인시설은 통계상으로는 민간개인보육시설로 집계되고 있으나 본 평가인증 신청에서는 본인들이 법인보육시설로 표기하여 통계상의 법인과 평가인증 신청서상 법인의 기준이 다른 데 기인함.

〈표 III-10-3〉 평가인증 참여신청 설립유형별 현황(2005~2007년)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신청 소계
참여시설수	1,496	1,796	143	3,924	29	4,480	11,868
신청비율	12.6	15.1	1.2	33.1	0.2	37.7	100.0

〈표 III-10-4〉 전체시설 대비 평가인증 참여시설 현황(2005~2007년)

지역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 협동	민간	전체 시설수
전체시설수(A)	1,643	1,475	298	11,828	59	13,930	29,233
참여시설수(B)	1,496	1,796	143	3,924	29	4,480	11,868
비율(B/A×100)	91.1	121.8	48.0	33.2	49.2	32.2	40.6

- 평가인증의 실시는 중앙정부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함.
- 인증방법 : 보육시설들의 자발적인 참여신청 이후 자체점검, 현장관찰 단계를 거쳐 심의위원들이 인증을 심의하고 결정함.
 - 인증지표 : 21인 이상 보육시설 대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대상(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 전담시설 대상(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됨.
 - 7개영역 80항목이 기본형이며, ① 보육환경 ② 운영관리 ③ 보육과정 ④ 상호작용 ⑤ 건강과 영양 ⑥ 안전 ⑦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 중에서 ①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준수 ② 재정관리의 투명한 운영 ③ 안전사고에 대한 보육시설의 책임 등은 필수항목이며, 필수항목 위반 시에는 인증을 통과할 수 없음.
 - 인증 주기 : 3년
 - 인증결과 활용 : 2010년도부터 정부의 기본보조금 지원과 연계함.
- 다만 현재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기관들은 평가/평가인증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사립/민간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평가/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드는 비용, 준비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을 문제로 제기함.

다. 세부 과제

1) 유치원평가제도의 도입과 정착

가) 유치원평가제도 도입

- 유치원평가제도는 2007년 시범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평가제도가 유아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제 1차 시행에서는 전국의 국공립, 사립유치원들의 참여와 현장의 제도 수용이 중요함. 따라서 유치원들이 평가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는 유치원 운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관련 전문가, 유치원 현장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로 평가참여를 장려하고 평가시스템의 효용을 제고시켜야 함.

나)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 유치원평가제도와 장학시스템을 연계하여 유치원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효율화 함.
 - 유치원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전반적인 수준은 물론 영역별 수준을 분석하여 장학시스템과 연계함.
 - 특히 개개 유치원들에서 평가점수가 낮았던 영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을 실시함.

다) 중앙정부 및 지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 유치원평가는 현재 지역별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초기 평가제도 개발 과정에서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개발됨. 즉, 평가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충분히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활용을 대비하여 점검하여야 함.
 -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시범운영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 지역교육청별로 유치원 평가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하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이 일반지표 및 지역별 지표의 개발, 효율적 운영체계 모색 등에서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함.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를 마무리 하고 제2차 시행시기(2010~2013)의 원활한 운영을 준비함.
 - 제1차 시행시기의 운영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성과가 나타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평가한 후 제2차 시행시기를 준비,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1차 시행시기(2006~2009)에서는 현재 40.6%로 나타난 보육시설들의 참여율을 80% 수준까지 높이도록 함.
 - 이를 위해 보육시설종사자들로 하여금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 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조력, 평가인증 참여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증결과의 적극적인 홍보, 정부 예산지원과 인증결과의 연계 등을 활용함.
 - 제1차 시행시기에 활용된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분석한 후 제2차 시행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를 준비함. 특히 평가인증지표 개선을 통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나)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후관리체계 구축

- 매년 상시 8,000~10,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상시 20,000~22,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실시되어야 함.
 - 사후관리는 대상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시설관리로서 인증시설, 유보시설, 불인증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인증시설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이 인증시의 질적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 상근·비상근 현장관찰자, 인증심의위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특히, 현장관찰자의 경우 참여 보육시설로부터의 평가를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함.

다) 지역사회 보육인프라와의 협력체계 강화

- 평가인증 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역내의 보육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력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지역사회 성공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함.
 - 현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은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후 제도가 정착되는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함.
 -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 참여과정 등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증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증통과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혹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라) 보육시설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연계함. 우선 2010년부터 기본보조금과 평가인증을 연계함. 이로써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함.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곧 교육·보육의 질로 연결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제 근로 여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반드시 근로 여건이 개선해야 함.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과중은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저해가 되고 있음.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운영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므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등 교사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근로기준법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기본임금은 노동 강도와 시간 및 전문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따라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최대과제임.
-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교사의 휴게시간과 연중 유급휴가 및 출산휴가 사용의 정상화가 필요함.
 - 보조교사, 대체교사, 청소부, 취사부 지원
 - 지원인력 수급관리체계를 구축

가. 배경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 50조3)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일일 8시간, 제 51조4)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한 주의

- 3) 제50조 (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4)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근로시간 최대 48시간, 합의에 의한 최대 52시간을 연중 내내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교사의 추가 배치는 곧바로 인건비로 인한 교육·보육 비용 상승과 연계되므로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가 관건임.

□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 교사의 사기와 이직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교육과 보육의 질로 직결됨.

-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육교사도 이와 비슷한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54조5)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실제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움.

-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점심시간도 영유아들의 식사지도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 60조6)에 의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1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6)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 중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제 73조7)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특히 보육시설 교사는 1년에 여름 겨울 각각 2~5일 정도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실정임.

- 근로기준법 제 73조8)에 의거, 임산부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유치원교사는 출산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음.

나. 현황

1)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로 현황

가) 업무시간

- 사립유치원 교사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10시간 33분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2시간 정도 더 근무함.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8)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표 III-11-1〉 유치원 교사 근무 시간(2005년)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근무시간	8시간 35분	10시간 33분	9시간 24분

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

- 공립유치원의 경우 122개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 운영 학급 수는 141개 학급임. 사립유치원의 경우 589개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일반 운영 학급 수는 2,432개 학급임. 유치원 종일반 이용 영유아는 60,040명임.
- 따라서 총 2,573개 학급에 종일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임.

〈표 III-11-2〉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2006년)

단위 : 개원,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학급수	141	2,432	2,573
원아수	2,820	57,220	60,040

다) 교사 급여

-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봉은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의 50% 수준임.

〈표 III-11-3〉 경력과 시설유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연봉(2005년)

단위: 만원, %

경력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봉	사립유치원 교사 연봉	국공립 대비 비율
5년 이하	2,372	1,214	51.2
6~10년차	2,756	1,553	56.3
11~15년차	3,090	1,608	52.0

라) 휴가

- 사립유치원 교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휴가를 하고 있으나, 학기 중에는 휴가를 내기 어려움.
-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은 유치원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본인 사퇴가 많음.

〈표 III-11-4〉 유치원 교사의 출산휴가 대처방법(2005년)

단위: 개원(%)

구분	교육청 지원	유치원 지원	본인 투입	유치원과 본인 공동	본인 사퇴	기타	전체
공립	380(85.2)	37(8.3)	8(1.8)	19(4.3)	0(0)	2(0.4)	446(100)
사립	2(0.8)	109(42.9)	24(9.4)	35(13.8)	59(23.2)	25(9.8)	254(100)
전체	382(54.6)	146(20.9)	32(4.6)	54(7.7)	59(8.4)	27(3.9)	700(100)

2)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 현황

가) 업무시간

- 보육시설 교사의 일일 평균 업무시간은 10.1시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5.6시간, 휴일 근무시간은 4.9시간임.

〈표 III-11-5〉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근무시간(1일 기준)(2007년)

단위: 시간

구분	평균근무시간	토요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전체	10.1	5.6	4.9
국공립	10.1	5.7	4.6
법인	10.3	5.6	5.4
민간개인	10.2	5.5	3.6
가정	9.5	5.6	11.0

나) 보육시설 운영시간

- 보육시설의 평일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8~10시간미만이 3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8시간 30.2%, 10~12시간 20.3%, 5시간미만 8.8%, 12시간이상 3.8%로 나타남. 10시간 이상은 24.1%임.

〈표 III-11-6〉 보육시설 운영시간(2005년)

단위: 비율(명)

구분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계
전체	8.8	30.2	36.8	20.3	3.8	100.0(632,859)
국·공립	1.4	28.1	45.9	22.5	2.1	100.0(89,825)
사회복지법인	3.2	31.6	42.0	20.2	2.9	100.0(98,082)
기타법인	4.9	30.1	41.2	20.7	3.1	100.0(39,760)
단체	7.6	32.6	39.1	16.2	4.5	100.0(10,004)
민간개인	12.6	32.9	32.8	17.9	3.9	100.0(319,825)
직장	3.0	13.6	38.6	41.0	3.9	100.0(7,769)
가정(놀이방)	12.4	20.2	33.3	26.7	7.5	100.0(66,850)
공동육아	1.2	9.7	53.2	30.5	5.4	100.0(744)

주: 복수응답임.

다) 교사 급여

-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보육교사의 월 급여 총액은 1,365천원이며, 국공립·법인보육시설과 민간개인·가정보육시설 간의 급여 차이가 큼.

〈표 III-11-7〉 보육교사 시설유형별 급여액(2007년)

단위: 천원

구분	기본급	월 급여총액	희망 월급여액	급여인상분
전체	1,284.4	1,365.3	1,778.8	50.4
국공립	1,448.5	1,524.9	1,993.1	-
법인	1,417.4	1,459.9	1,891.9	20.5
민간개인	1,077.1	1,198.6	1,483.7	52.5
가정	867.9	979.4	1,298.5	49.3

-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112만 6천원이며, 2005년도 자료에 따르면 79만원 이하를 받는 보육교사가 25.7%임.

다) 휴가

□ 2007년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교사의 실제 휴가 일수는 10일 이하가 56.3%임.

〈표 III-11-8〉 보육교사의 실제 휴가일수(2007년)

단위: %(명)

구분	10일 이하	11~15일	16~20일	21일 이상	계
전체	56.3	24.2	9.2	10.3	100.0(574)
국공립	47.5	29.8	11.0	11.8	100.0(255)
법인	56.1	22.3	12.1	9.6	100.0(157)
민간개인	62.9	20.6	6.2	10.3	100.0(97)
가정	81.5	12.3	0.0	6.2	100.0(65)

□ 보육교사 중 출산휴가를 준수하는 경우가 48.7%임.

〈표 III-11-9〉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준수 여부(2007년)

단위: %(명)

구분	지킴	규정은 있으나 지키지 않음	관련 규정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전체	48.7	4.0	2.1	45.2	100.0(902)
국공립	62.5	3.1	0.3	34.2	100.0(357)
법인	48.5	6.2	1.2	44.0	100.0(241)
민간개인	38.9	3.7	4.9	52.5	100.0(162)
가정	25.4	2.8	4.9	66.9	100.0(142)

다. 세부 과제

1) 교사 근무시간의 정상화

□ 8시간 근무시간제 도입을 위한 교사 인력 배치 지원

- 유치원의 경우 711개원 2,573개 학급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급당 종일반 교사 1인 즉, 2,573명의 종일반 지원 교사가 추가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은 10시간 이상 운영 시설이 24.1%로 29,233개소 대비 7,045개소임. 1개 시설에 1인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7,045명의 지원교사가 요구됨. 그러나 보육시설 1, 2, 3급 교사수는 104,320명으로 1개 시설당 보육교사가 3.6명(3.6학급)임을 감안하여 7,045개소가 모두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종일반 지원 교사수는 25,362명임.
- ※ 종일반 교사 지원인력은 시간제 근무인력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교사 지원인력 수급 제도 마련

□ 대체교사 제도 확립

- 교사의 휴가나 연수 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 지원인력 제도 확립

-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 영유아의 급·간식을 담당하는 취사부 등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함.

3) 교사 임금의 현실화

□ 기본적인 교사임금의 현실화

- 사립유치원 교사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8시간 기준 일일 27,840원, 월 환산 727,320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들이 하는 일의 강도와 근로시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함.

4) 교사 휴가 사용의 제도화

□ 교사가 출산휴가 및 연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및 분위기 마련

- 보육교사가 법정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해야 함.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임.
- 교사의 특성 중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 종류, 나이, 결혼 유무, 건강상태와 같은 교사의 일반적 배경, 급여, 후생복지, 근무시간 등과 같은 근무조건, 교사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교사의 심리적 특성, 교사 신념, 전문성과 같은 교육관,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 태도 등 다양함.
- 보육시설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4.1% 수준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인력 지원이 요구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할 인력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가. 배경

-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 교사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실제로 교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교사들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추가 인력의 배치는 곧바로 인건비로 인한 교육, 보육 비용 상승과 연계 되므로 어떻게 이 비용을 마련하여야 하는가가 관건임.
- 교사들은 원칙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 보육서비스 제공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에서는 추가 인력없이 유치원교사, 보육교사가 기관의 청소, 영유아들의 배식준비 및 뒤처리, 여러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함.
 - 이 경우 교사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질 높은 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청소, 영유아들의 배식준비 및 뒤처리, 여러 행정사무 등도 약식으로 수행될 여지가 있어 문제임.

나. 현황

1) 유치원교사 근무실태

- 유치원교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반 정도임.
 - 유아 직접교육 시간이 약 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준비와 문서나 기타 잡무에 매일 약 1시간, 등하원 지도나 청소 등에 약 4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음.
-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설립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공립 교사들은 하루에 평균 8시간 반 정도를 근무하고, 사립 교사들은 10시간 반을 근무하고 있음.
 - 유아 직접 교육시간과 기타 잡무시간은 공사립 교사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활동 준비시간을 비롯한 제반 다른 활동시간은 사립 교사들이 공립 교사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표 III-12-1〉 유치원 교사의 업무 시간 평균(2005년)

단위 : 시간

구분	총근무 시간	유아직접 교육	교육활동 준비	부모 상담	등하원 지도	청소	문서	기타 잡무
평균시간	9:24	5:19	1:00	0:32	0:47	0:46	0:56	0:55
공립	8:35	5:18	1:41	0:28	0:31	0:42	1:02	0:54
사립	10:33	5:22	2:27	0:36	1:06	0:52	0:43	0:56

2) 보육교사 근무실태

- 보육교사의 업무
 - 보육교사의 85.2%가 영유아보육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나 청소(5.6%), 행정업무(5.3%), 시설운영(1.4%), 급·간식(1.2%) 등의 업무도 맡고 있음.

〈표 III-12-2〉 보육교사 담당 주업무(2007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행정업무	시설운영	급·간식	청소	3가지 이상 중복 응답	계
전체	85.2	5.3	1.4	1.2	5.6	1.3	100.0(1,150)
국공립	83.7	6.7	0.4	0.7	6.7	1.7	100.0(461)
법인	84.0	7.1	3.8	0.3	3.5	1.3	100.0(312)
민간개인	88.3	3.0	0.5	1.0	6.1	1.0	100.0(197)
가정	87.8	1.1	0.6	4.4	5.6	0.6	100.0(180)

- 보육교사들의 업무량과 관련 보육교사의 43.6%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인식함.

〈표 III-12-3〉 보육교사 업무량 인식(2007년)

단위: %(명)

구분	매우 적절	적절	과중	매우 과중	전체	X ² (df)
전체	4.7	51.6	38.3	5.3	100.0(955)	
시설유형						
국공립	2.9	46.8	44.4	5.9	100.0(376)	53.59(9)***
법인	5.0	45.9	42.5	6.6	100.0(259)	
민간개인	1.2	63.9	31.3	3.6	100.0(166)	
가정	12.3	59.7	24.0	3.9	100.0(154)	
시설규모						
20명 이하	10.5	60.2	25.1	4.1	100.0(171)	39.71(9)***
21~39명	6.8	53.0	36.4	3.8	100.0(132)	
40~79명	3.4	49.2	40.2	7.2	100.0(321)	
80명 이상	2.2	46.2	47.3	4.3	100.0(279)	

주: *** p < .001

□ 대체교사 운영 실태

- 2007년 조사에서 시설의 61.3%가 대체교사를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4년도 대체교사 활용률 25%에 비하여 활용이 증가함.

※ 대체교사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 근무 시 투입된 보육교사를 의미함.

- 시설유형별 대체교사 활용 정도는 국공립보육시설이 73.2%로 가장 많았고, 법

인보육시설 52.3%, 민간개인보육시설 55.1%, 가정보육시설 54.5%임.

- 대체교사 이용시 문제점은 교사 수급 부족임. 특히 대체 보육교사들은 월 단위 근무에는 부응하면서도 2~3일, 혹은 3~4일 근무하는 대체교사는 기피함.

〈표 III-12-4〉 대체교사 활용현황(전국, 2007년)

구분	단위: %			X ² (df)
	있음	없음	계	
전체	61.3	38.7	100.0(657)	
국공립	73.2	26.5	100.0(257)	
법인	52.3	47.7	100.0(172)	34.17**
민간개인	55.1	44.9	100.0(118)	
가정	54.5	45.5	100.0(110)	

- 대체교사들은 보육시설에서 주로 보육교사를 임시로 대체하는 보육업무(51.8%), 청소(22.5%), 행정업무(19.1%) 등을 수행함.
- 대체교사들이 보육경험이 없거나 혹은 책임감이 부족하여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14.3%), 비용의 부담(13.8%) 등이 문제로 지적됨.

다. 세부 과제

1) 교사 지원인력의 배치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로는 교재교구 제작 등 교육활동 준비, 부모상담, 차량 탑승 등 등하원 지도, 시설 및 교실 청소, 급·간식 준비 및 뒤처리, 문서작성 등 행정업무, 평가(인증) 준비 등 기타 업무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 대상의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 제공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함.
 -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인력의 유형으로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관리를 위한 청소부 및 취사부 지원 등임.

〈표 III-12-5〉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유치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대체교사	· 8,290개원의 이용률 50%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개원당 연인원 50명 적용	· 전 시설의 이용률 73.2% 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실태의 1/2를 적용하여 개시설당 연인원 50명 적용
청소부(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취사부(1인) (종일반 운영 기관에 지원)	· 국공립유치원: 122개원 · 사립유치원: 589개원	·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 ^{주)}

주: 가정보육시설은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임.

가) 보조교사 배치 지원⁹⁾

□ 교사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고 있음. 상시 추가 근무시간 8시간 준수를 위해 정규직 보조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영유아 교육·보육이란 영유아들을 그날그날 돌보아야 하고, 만약 교사들이 아프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미루어 업무를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므로 상시 보조인력이 필요함.

- 보조교사는 종일반 교실 담임교사들의 추가근무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일시적으로 담임교사가 반을 비우게 되는 경우 반을 담당할 수도 있음. 즉, 변동근무제 시 반 운영 담당, 기관의 행·재정 업무 담당, 평가(인증) 준비 담당, 원장·시설장 업무지원, 종일반 지원, 영아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전체 기관에 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함. 우선 지원 대상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농어촌 소재 기관 등으로 함.

9) 일본의 경우 보육사 운영은 기준보육사, 예비보육사, 가산보육사로 운영되고 있음. 기준보육사란 일반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사로 보육사대 영유아 비율은 0세아 1:3, 1~2세아 1:6, 3세아 1:20, 4~5세아 1:30임. 동시에 모든 시설에 시설 구분없이 예비보육사 1인을 지원하여 비담임교사로 활용하고 있음. 가산보육사는 장시간 보육, 장애아보육, 산후지원, 간호보육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임.

나) 대체교사 배치 지원

- 대체교사 지원은 현행 보육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기초하여 1일 6시간, 일주일에 30시간 근무 시 하루 35,000원, 월 800,00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동일시설의 초임 인건비를 지급기준으로 해야 할 것임.
 - 유치원 대체교사 추계
 - 유치원의 대체교사 활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략 50% 수준으로 대체교사 배치를 계획하면, 8,290개원에 연인원 145,075명이 배치되어야 함.
 - 보육시설 대체교사 추계
 - 보육시설의 경우 대체교사 활용률 73.2%를 고려하면, 연인원 386,290명의 대체교사 지원이 요구됨.

다) 청소부와 취사부 배치

- 모든 육아시설에 상시인력으로 청소부와 취사부를 지원함. 다만 현재 취사부가 지원되고 있는 국공립기관은 제외함. 소규모 시설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를 겸직하도록 함.
 - 유치원의 경우
 - 모든 유치원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종일반을 운영하는 122개 국공립유치원과 589개 사립유치원 즉, 총 711개 유치원에 취사부 1인을 배치함.
 - 보육시설의 경우
 - 전체 보육시설에 청소부 1인을 배치함.
 - 가정보육시설 11,828개소에서는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하도록 함.
 - 취사부가 배치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1,643개소)· 법인보육시설(1,475개소), 그리고 가정보육시설(11,828개소)을 제외한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에 취사부 배치가 요구됨.

2) 교사 수급관리체계 구축

- 교사 지원인력의 원활한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교사 수급 기능을 지원인력 수급 관리 기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지역사회내 현재 인력 수급관리를 하고 있는 기구를 통하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 수급관리 기능을 맡게 할 수 있음.(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활용)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지원인력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질적 교육·보육서비스를 받게 됨.
 -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인력의 활용은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임.

IV

토론자 원고



IV. 토론자 원고

1. 김재남(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2. 김형준(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3.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 선재희(KBS 문화복지팀 기자)
5. 이 영(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6.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7. 최창한(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가나다순)

발전적 유아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 김재남

1. 부모의 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립유치원 취원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형평성은 반드시 필요

저출산 사회에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재정투자수준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사립유치원간의 재정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유치원 취원아의 78.8%(2006년 기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많은 원아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명분하에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 혹은 교사 인건비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유아 1인당 연간 정부 지원예산을 보면 공립은 470만원인데 반해, 사립은 1백만원으로 4.7배의 격차가 난다.

2007년 유아교육의 교육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액은 사립(2백61만원)과 공립(1천5백39만원)간 6.8배의 격차를 보인다.

<공사립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천원, 명)

구 분	사립	공립	비고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	425,882,721	560,636,646	4.7배
원아수	423,217	118,287	
유아 1인당 지원액	1,006	4,739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공사립유치원별,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수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유치원당 지원비	비고
공 립	4,413	67,941,827	15,396	6.8배
사 립	3,808	9,951,589	2,61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이러한 예산지원의 편중은 결국 전체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유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 보호 받고 개인이 가진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2.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는 전액 국가 지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2006년 30만미만 도농복합지역에 한해 학급담임 수당 월 11만원을 지원에 그치고 있다.

2006년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유능하고 행복한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유아에게 최적의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고 부담없는 자녀 양육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6년 공립유치원 교원당 인건비 47,107천원을 기준으로 2008년에는 50% 수준에서 201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08-2012 공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재정지표 추정

(단위: 천원)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교원당 인건비	공립교사인건비	47,107	47,107	47,107	47,107	47,107	47,107
	사립교사인건비	16,843	23,553	28,264	32,975	37,685	47,107
	사/공(%)	35.8%	50%	60%	70%	80%	100%
	사립교원수(명)		28,181	30,522	30,377	30,917	31,741
	총액(단위: 백만원)		663,747	862,676	1,001,668	1,165,106	1,495,195

* 출처: 2006 교육통계연보(공립유치원), 2006 국가교육통계센터데이터베이스(사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교원당 인건비=공립 유치원 총인건비/총 교직원수
(교원과 직원을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가정)

사립유치원의 교원당 인건비는 2008년 공립유치원 인건비의 50%인 23,553천원, 2010년에는 70%인 32,975천원, 2012년에는 공립유치원 인건비와 같은 47,107천원으로 산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일일 10~12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이 수업준비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토요일도 수업과 교재준비로 인해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약 8,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내년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OECD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 기회이다.

3. 종일반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

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종일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2007년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은 미약하나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아교육법 제27조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일일 8시간~13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지내는 유아들에게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종일제 학급에는 학급담당 교사의 1인 이상의 종일제 운영 교사를 배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1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급식시설 설치,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하자보수공사, 놀이기구 교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각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5.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현재 우리나라의 만0~5세 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은 교육부와 여성부 그리고 농림부가 각각 별도로 재정을 확보하여 유사한 항목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3~5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정은 교육부와 여성부가 각각 별도로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여기에 또 농림부가 가세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원을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5세 무상 교육, 보육의 경우 초기에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유아도 있었으며,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후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대상 유아의 중복 지원을 피하고, 대상 유아 선정도 부처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중용하여 폐단은 줄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유아를 서로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시설의 신규 설립을 위해서 교육부와 여성부는 각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을 추계할 때에 교육부와 여성부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대 부처의 시설은 고려하지 않고 신규 설립을 계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부처가 중복 관리하고 있는 만3~5세 아동을 위한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유치원의 정원 대비 취원율은 75% 수준이고, 보육시설은 82% 수준이다. 즉 현재도 시설이 남아돌고 있고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두 부처는 해마다 신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은 교육과 보육 현장으로 까지 확산되어,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설립 하려고 하면 사립유치원과 민간 보육시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체제로 인한 폐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이에 따라 유아기는 교육과 보육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통합된 단일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공통된 인식하에 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에서 그간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 조정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연령을 구분하여 만 0~2세는 보육시설이, 만3~5세는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가 담당하는 연령구분체제로 각각에 대한 행정을 분리하여 관할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제안들이 있었다.(임재택 2003)

세계적으로 3세를 기준으로 영아시설과 유아시설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누어 관할하는 연령구분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생애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근 모든 영유아에 대한 교육부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정책의 방향 또한 '생애초기의 교육적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같은 선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점진적인 통합 모형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을 확립하고 3~5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어 조정이 필요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갈등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단계를 거쳐 일원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 보육비 지출에 있다. 이러한 지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독점적인 유아교육·보육정책 수립보다는 한국사회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이끌어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장을 계속적으로 열고 그 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만이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고질적인 갈등과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이다. 미래 백년대계의 한국을 이끌어 갈 사랑하는 우리아이들에게 큰 힘과 꿈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드는 유아교육, 보육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육아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 현재에는 주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은 한편에서는 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 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여성의 노동 참여를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행정 관리의 편이성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육아에 대한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하나의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기본적으로는 아동들을 보다 바람직하게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볼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특히 영아의 경우 시설을 통한 보육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유럽에서는 도리어 가정 내 보육을 권장하는 추세
- 그러므로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보육에 대해서도 시설에서와 유사하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발제문에서 보육도우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것은 적절해 보임.
- 육아 정책의 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그동안 유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려야만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음.
 - 현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육아 정책 수단으로는 (1) 국공립 시설을 통한 지원, (2) 차등보육료와 유아 기본보조금, (3) 시설보조금, (3) 가격 상한제 등의 규제, 그리고 (4) 평가인증제도가 있음.
 - 이들 정책 수단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규모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 농어촌 아동/장애 아동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아동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민간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그러므로 제2장의 정책 대안들은 의미가 있음.
- 저소득층 아동 육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차등보육료로 일원화할 필요
 - 현재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육아를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①항의 규정) 국·공립 보육시설은 좋은 시설과 낮은 보육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아동 육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수단 인지는 불분명함.
- 민간부문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평균적이고 균일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차별화하고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경쟁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차등보육료로 일원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실제의 보육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비용으로 평균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소득층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택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건립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공립 시설의 건설비와 운영비가 부담스러워 국공립 시설의 건설에 앞장서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현실화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함.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가격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가격규제 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경쟁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로 개편해나갈 필요. 단, 단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일부의 보육시설은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한편

일부의 보육시설은 추가적인 지원과 정부의 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후자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만으로 간접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시장 실패 원인	정책 목표	현재의 지원 수단	미래의 지원 수단
육아 기회의 보장	농어촌 아동/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육아 기회 제공	국공립 시설	국공립 시설 민간 시설(추가 보조)
외부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육아 확대	차등보육료 국공립 시설	차등보육료
	전반적인 보육 기회 확대	영아 기본보조금	기본보조금
정보의 비대칭성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보육센터	보육센터
독점적인 성격	가격 또는 공급 관리	가격규제 인증제도	국공립 보육시설 인증제도
	품질 관리		
기타	여성 노동 공급 확대		세액공제제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나 규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약간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상이한 특성 이상으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유치원은 가격규제의 대상이 아닌 반면, 보육시설은 가격 규제의 대상임.
-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모든 인가된 육아시설이 같은 기준에서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토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취업모의 양육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정책은 취업모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보육지원이 급속히 확대되던 시기에 보육시설의 이용권리는 취업자에 한정되어 있었고 실직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시설의 이용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스웨덴에서 보편적 보육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이에 비교하면 아동을 돌볼 보호자가 근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1> 호주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2007년 기준)

주당 시간	주당 최대 금액	요 건
24시간 CCB	\$80.88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
24~50시간 CCB	\$168.50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보호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50시간 이상의 CCB	시간당 \$3.37 추가	특별한 이유로 50시간 이상 보육할 수 없는 경우

주 : 연간소득이 \$35,478 이상인 가구의 경우 주당 최대 급여액이 감소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주당 \$24.85의 정액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http://www.familyassist.gov.au/>

육아휴직과 보육지원이라는 양육지원의 두가지 수단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육아기 취업모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산전 후휴가와 보육지원 사이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육아휴직 실시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족,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수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데다가 영아보육서비스 공급 및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출산 후 아이를 직접 돌보

는 선택을 하는 여성이 많다. 육아휴직은 너무 길어질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저해하고 복귀 후에도 임금이나 승진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체로 합의되는 양육지원방식은, 12개월 정도까지는 육아휴직을 강화하여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취업모가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모의 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1세와 2세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격상한제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점유율 30%를 넘는 시점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가격예외 허용을 위한 국공립 점유율 임계치를 전국적인 차원으로 적용할지 지역적인 기준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역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함으로써 전국 시행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비록 국공립시설이 30%를 넘는다고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적 민간독점이 형성되어 보육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점유율 30%를 전국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지역 기준으로 할지, 만약 지역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의 지역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실근로시간이 10시간 내외임을 고려하여 보조교사, 대체교사, 청소부 인원 및 취사부 인원 지원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원 지원이란 인건비 지원에 다름 아닌데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은 전형적인 공급자 보조금 방식이다. 현행 차등보육료지원은 수요자 보조금 방식이며 기본보조금도 기본적으로 수요자 보조금 방식이다. 현재 정부의 보육 지원은 국공립시설운영을 제외하고는 수요자 보조금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와 전혀 다른 공급자 보조금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의외로 보인다. 전격적으로 공급자 보조금을 도입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1〉 제안된 유치원과 보육시설 지원 개요

	유치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대체교사	· 8,290개원의 이용률 50%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상태의 1/2를 적용하여 개 원당 연인원 50명 적용	· 전 시설의 이용률 73.2%적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상태의 1/2를 적용하여 개 시설당 연인원 50명 적용
청소부(1인)	· 8,290개원	· 29,233개소
취사부(1인) (중일반 운영 기관에 지원)	· 국공립유치원: 122개원 · 사립유치원: 589개원	· 민간개인보육시설 14,287개소 ^{주)}

주: 가정보육시설은 청소부와 취사부가 겸직임.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현행 보육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저소득 부모가 자신이 저소득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육시설장이 아동의 가구가 빈곤한지 여부를 알아야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부모는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육료를 납부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육시설장이 가구의 소득상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토론

KBS 문화복지팀 선재희 기자

KBS 문화복지팀 선재희 기자입니다.

여성부 출범 이후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출입해 온 기자입니다. 여성부가 생기면서부터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꼭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고, 보육 업무가 실제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순간도 지켜 보았습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제시한 ‘차기정부의 육아 정책 과제’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농어촌이나 장애아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제가 보육 시설을 취재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총망라한 것 같습니다. 기자이며 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제가 좀 현실적인 견지에서, 보육시설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하는 여성들이 안고 있는 육아 고민의 현실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추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다 그러하듯이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거의 전쟁과도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좀 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육아에 관한 한 고민의 종류는 달라질지언정 고민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민의 질은 오히려 갈수록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에게 더 큰 문제는 영아 때보다는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아기일 때는 누군가 그엘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는 대학 소속 사립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추천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침 9시까지 부모가 데려다 줘야 하고 12시면 끝나서 또 부모가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아이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될까봐 어떤 희생을 치르든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에선 거리가 좀 있어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다니시며 이 일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같은 KBS 기자인 남편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오후 4시에 출근하는 부서를 자원했습니다. 그 부서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애를 태워다 주고 태워 오는 일을 남편이 맡아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다행히 희생적인 남편을 두었기에 제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마 그렇지 못했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요즘은 컴퓨터 게임도 많고 케이블 텔레비전도 하루 종일 만화를 틀어줍니다. 우리 아이는 게임 박사이다 만화 열혈팬이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아이였지만, 4학년이 된 지금은 공부가 평균이 채 안 됩니다.엄마인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더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애를 보호하고 더욱 우수하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늘 그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동안 많은 유아들이 이런 식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집중력을 잃고 정서도 불안해지고 생각하는 것 싫어하는 그런 어린이로 자랍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부모들이 저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학자가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 소외되는 ‘나홀로 어린이’**

하지만 그나마 저는 배부른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에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한 30대 여성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7살, 막내는 5살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엄마가 일 끝내고 돌아오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자기들끼리 간식도 알아서 챙겨먹고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의 10% 정도는 이런 ‘나홀로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저는 정말 그 애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돌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나 국공립 어린이집별로, 사회복지관별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방치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아동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통한 안전 예방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안’에 부모가 일하는 동안 홀로 집에 남아 있는 어린

이들을 지역 사회가 배려하고 돌봐주는 그런 보호 대책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 내 영아 양육 지원’ 부분**

베이비시터와 관련해서도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선 YWCA가 베이비시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도 주고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사후 교육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들은 베이비시터를 단순한 인력 알선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꽤 알려진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일했던 한 여성을 취재한 적 있는데, 이 분 말로는 베이비시터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받은 교육이라고 해봐야 2시간 정도 비디오를 본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누구나 아기 키워본 경험있는 여성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인식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베이비시터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베이비시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 일을 하다 아이를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개인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한다든지, 예고도 없이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베이비시터들이 곤란한 경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베이비시터를 교육해 내는 한편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 대우하는 시스템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부분**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여성이 정신 지체 장애인인 경우 몸이 좀 불편한 지체 장애인 남성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선 부모 모두 장애인인 셈입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아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려서 멀쩡한 아이를 장애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 장애인인 경우도 아이의 언어 발달이 덩달아 늦어 버리는 문제를 낳습니다. 또 청소나 먹을거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집안도 엉망이고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좋을 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이 살기 힘든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직후부터 양육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가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인력의 수급관리제도 마련’ 부분**

저는 ‘보육교사의 하루’란 아이টেম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를 쭉 따라가 보는 그런 아이টেম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밤 8시까지 어린이집에 머물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말 마음놓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아이들 돌봐주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후딱 먹습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아침 11시면 흐트러져서 엉망이 돼 버립니다. 요즘은 어린이집 교사들 대학원까지 나오신, 고학력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과가 끝나도 다음날 수업준비, 교재준비 등으로 어쩔 땐 밤 11시에 퇴근하는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한달에 백 3-40만원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요즘은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시설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은 이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을 것입니다. 보육의 질은 결국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사명감있는 보육교사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상황이면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오래 일한다거나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일한다거나 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노동의 강도도 무척 세지만,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보수 수준이 너무 열악합니다.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토론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 영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에서나 처음 시작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안다. 오늘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이옥소장님과 함께 말씀하신 모든 연구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정부와 전문가, 관련 부분의 현장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우선 육아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잡아 놓았기에 짧은 기간동안 우리나라 육아 정책이 크게 도약하는 기틀이 잡힐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린다.

육아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차기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대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은 중요한 여성가족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자녀의 출산, 육아, 보육과 교육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가족정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이 부분들은 동시에 육아 정책의 핵심과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현대 부모의 고민은 자녀양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 내에서의 의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즉, 현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육아지원 시설의 질은 높게 하면서 동시에 부모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육아 지원 대책 중에 출산을 제고와 부모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차기정부에서 꼭 이루었으면 하고 바라는 최우선육아정책과제로 12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12가지 과제에 육아 시설의 체제 정비, 지원체계,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육아시설관련문제와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소외계층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보장, 가정 양육과 부모지원 등까지 포함시킴으로서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과제 선정을 위해 노력하신 의도가 보인다. 본 토론에서는 육아 정책 12과제 중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어 졌지만 육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되는 출산과 육아, 가족을 지원하는 과제 관련 정책에 초점을 두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의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문제 중에서 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육아 문제는 출산직후터 영유아기의 육아문제이다. 그러나 영아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매우 미흡하다. 발제자도 지적하였듯이 영아 양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미비한 정책으로 인해, 이미 시중에는 영리회사가 상업화한 사설 사업이 성행 중이다. 늦게나마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아 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발제하신 내용에서는 “가정내 영아 양육 지원방안”의 유일한 대책으로 “가정내 보육도우미과건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영아는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부모들도 영아기에는 가정내 보육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육 도우미 과건제도가 소규모 개별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의 가정보육시설은 20명을 기준으로 하여 거의 시설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모입장에서 볼 때 영아는 시설화된 가정보육시설과 가정내 보육도우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부모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둘 다 질적으로 보장된 개별화된 소규모 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대안도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질적으로 보장된 영아 대상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이(20명 보다 적으면서 개인 도우미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5-6명 정도의 가족과 같은 규모)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제시된 보육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40시간의 교육과 실습)

지금은 시작 단계이므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전에 보육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통해 일정 수준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시간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기준과 처우 기준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가정내 보육도우미는 물론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체 교사나 시간제 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3. 가임여성의 출산율 대책으로 제시된 “취업모 육아 지원 정책”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긴 하나 기존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활성화의 필요성 정도로 서술되어 대부분 선언적일 뿐 가시적 효과를 얻어 낼 구체적인

실천 정책 과제 대안으로는 아쉽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세부 과제는 원론적이고 어느 과제는 매우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4.5.과제 이외의 대부분의 과제에도 기존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활성화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모든 정책들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듯이 서술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구분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할 듯하다.

4. "취업모 육아 지원 정책"중에서 2008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육아휴직분할사용 제도"는 기존의 "육아 휴직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한 진일보한 정책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개선책이 빨리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5.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함은 오랫동안 주장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게 지원해 주는 대책이 미비하다. 특히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산 직후부터 아버지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물론 영아의 발달이나 가족간의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서도 자주 보고 되고 있다.

아버지가 육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면 우선 남성이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야 하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예로 미국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는 임신기간 중에는 매 정기검진 때 남편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켜 산모의 몸 상태, 심리 상태는 물론 태아의 발달과 변화에 대해 상세히 교육한다. 그리고 출산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 아버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아버지교실을 열어 아버지에게 신생아 수유방법, 기저귀갈기, 목욕시키기, 그리고 퇴원 후 아버지가 집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자세히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받아야 아기를 집에 데리고 퇴원할 수 있게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도 아버지에게 육아에 대한 교육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신생아 육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있어 어머니 조차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육아를 위한 실질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여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수과정으로, 그리고 부모가 된 직후에 병원에서의 관행이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한다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되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 친가족적인 환경이 쉽게 조성될 것이다.

6. “가정내 영아 양육 지원”과제와 “취업모 육아 지원 정책”이외에 두 가지만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시된 대책으로 평가인증제가 있다. 그런데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가 성공하려면, 평가인증과정은 물론 일단 평가인증을 받고 난 후 그 질이 지속되는지 점검할 지속적인 후속 관리 방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증 후에 지속적으로 수준을 유지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정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평가인증과 재정지원체계를 연결시키는 제도와 같이 인정이 끝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7. 둘째, 보육서비스와 교육의 질적 수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은 교육과 보육서비스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마련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제시된 교사관련대책은 주로 근무환경개선위주이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질적 수준이 확보된 교사의 양성과 수급의 문제이다. 평가인증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능력의 수준을 갖춘 교사를 찾기 힘들고 수준 갖춘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발제자가 제시한 지원인력의 수급제도에서 어떻게 교사와 지원인력들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수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 마련했으면 한다. 예로, 지원인력의 교육과 질적관리, 시설과 인력간의 연결망 구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지원 인력풀을 정부에서 인가 받은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로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사무소 등이 시설과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지원 인력풀에 대한 정보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시한번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립 2주년을 축하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나라가 유아 선진국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되길 기대한다.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토론

한국유아교육학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부경

참여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촉진과 저출산 문제해결 및 생애초기교육 강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왔다. 물론 아직도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정책변화와 지원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설립 또한 이러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막 2년을 맞이하는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육아정책개발센터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체제정립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선진국진입을 위해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육아정책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각 정책별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실천과제를 제시한 이 보고서는 매우 가치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제시된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정책의 전체적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제안된 과제 중에서 의견 개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I. 제안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1. ‘육아’ 및 ‘육아정책’의 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양육과 부모지원 이외의 대부분의 정책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교육·보육에 국한하고 있다. 육아시설, 육아비용, 육아서비스에서도 모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하여 ‘육아’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육아비용’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육아’를 너무 축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육아’란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영양, 건강서비스나 지역사회기관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등 보다 폭넓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국민적 책무성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

만일 교육, 보호, 복지가 통합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제를 기반으로 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라면, 육아서비스를 이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육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까 우려된다.

2. '육아정책' 방향제시의 필요성

본 보고서에는 차기정부가 실천해야 할 세부 정책과제는 제시되어 있으나 정책의 커다란 기초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정책이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작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이원화체제의 문제점을 밝혔고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과제도 그러한 커다란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교육·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차기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여건마련의 단계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양 기관의 양적, 질적 수준을 서로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과제 추진만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사람에게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편안하지 않아도 먼저 살림살이를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먼저 좋은 집을 짓는 데에 주력하고 그 후 하나씩 필요한 물건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없다. 이는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같은 형편이라도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방향성이 중요하며, 특히 이원화체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어떠한 세부과제보다 먼저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차기정부에 제시하는 정책과제라면, 그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던 육아정책개발

센터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이란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같은 과제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물론 유아 교육·보육정책은 무엇보다 그 중심에 질적인 유아의 삶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II. 제안된 정책 과제에 대하여

1.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 보장 정책과제 부분

유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제안은 매우 적절하나 안전관리부분에서 현재 현장에서 매우 문제시되고 있는 통합버스운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구윤미, 2007)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차량운행시간이 30분-1시간이 50.4%, 1시간이상도 32.9%로 나타나 상당한 시간을 차량지도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능한 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입제 차량운행의 금지와 보조인력 지원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법조항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영유아의 최우선적 기본권의 보장에서 영양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 보육시설 급식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이다. 현재 무상보육비는 종일제 기준이고 급식비가 포함된 액수로서 총액자체가 적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하루 종일을 기관에서 지내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교사채용 우선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은 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권 확보는 물론 가족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채용이 필수적이다.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특수교육기관이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수에 비해 일반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가

많음에도 지원은 미흡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에게 일정금액만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아와 이들의 입학을 허용하기 어려운 입장인 기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별도 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통합교육은 장애아와 일반아, 교사,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인건비, 운영비 모두 지원된 상태에서의 장애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5년까지 80%까지 확보가 아니라 반드시 통합교육은 교사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초등학교내 교실을 이용한 유치원 시간외 유아보육의 문제점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양 기관을 모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엇보다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등학교 내 교실을 이용한 유아보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내 교실을 이용한 영아보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협력과 연계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내에서 유아대상으로 유치원 시간외 보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제시한 “초등병설유치원의 활용성을 증대 시킴 - 종일제 시행 확대를 적극 지원함”의 정책과 상치되는 정책이 된다. 병설유치원이 반일제만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유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치원의 종일제 확대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병설 유치원에 만 3세, 4세 학급이 없는 경우 빈 교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병설유치원이 만 5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 이유는 3, 4세 학급 증설을 원하지만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조부경, 고영미, 2006), 이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읍면단위에서는 현재 전체 유아수가 적어서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원아 모집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아반이 아닌 만 3-5세의 경우 초등 유휴교실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유치원도 만 3, 4세반과 종일반 확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유아보육정책은 거의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다.

4.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정책과제 부분

국·공립과 민간 또는 사립의 균형을 이루고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교육·보육 받을 수 있는 유아수를 모두 포함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이 동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수요예측을 하여 기관을 확충해가는 것은 갈등과 재정의 낭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원체제 하에서는 양 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수요예측이 중요하다. 한편 새로운 시설에 투자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이나 사립기관을 공립화 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내용 중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기 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병설유치원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조부경, 고영미, 2006), 가능한 한 병설유치원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의 분교장과 같은 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병설되어 있는 행정체제가 아니라 시설은 초등학교 내에 있다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단설유치원이 분유치원이 되고 그 유치원에 속한 분교장으로 병설유치원 체제를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이 각각 정체성을 살리면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5.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법인화 방안 및 지원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이를 위해 법인화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 정책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는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든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을 법인화하기 보다는 선 재정 지원, 후 법인화 유도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법인화 이전의 사립유치원 또는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법인화를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먼저하고 일정 정도(최소 3년에서 최고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그 동안에 법인화의 조건을 갖춰 학교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유치원 및 법인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다(고영미, 이기섭, 정광진, 2007). 국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교사 인건비 지원이나, 법인 출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 지원, 또는 자산 보상 관점에서의 일정

금액 지원, 그리고 국가 헌납 자산 보상에 준하는 국·공립 시설 수준의 안정적 운영 보장 등과 같은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중 교사 인건비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전체 교사인건비를 한 번에 확보한다는 것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보육사업의 공공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설립하였는가가 아니라 공공화된 운영형태인가 아닌가로 시설 구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정병호, 정진경, 이부미, 2003). 이를 볼 때 법인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는 국·공립시설은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볼 때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현행 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6.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체계의 발전: 형평성에 기반을 둔 지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체계의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형평성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표준교육·보육비 지원금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보육, 교육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조부경, 2007).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표준보육·교육비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은 균등한 금액을 표준보육·교육비 항목으로 산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지원 항목으로 반일제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종일제를 다니는 유아의 교육비는 학부모 부담이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교육비와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보육시설은 보육비 지원금에 급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종일제 보육비를 받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연령의 3-5세 유아일지라도 보육시설에 다니느냐,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부모의 혼란과 질적 차이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문

제점이 있다. 지원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7. 기본보조금이나 다양한 형태의 지원보다는 교원의 인건비 우선확보 및 직접적 지원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에는 무상교육비, 보육비 확대와 더불어 2자녀이상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기본보조금, 두 자녀 이상 교육보육비, 시설확충비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정비하여 무엇보다 먼저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 확보 및 안정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와 교육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로부터의 지원 부족이며, 그중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지원을 하여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액수와 지원방식도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교육, 보육의 질적 수준 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체감도가 낮다. 기본보조금이 인건비 보조가 될 수는 없으며 유아나 기관지원 방식 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교사의 인건비를 공사립, 민간 차이 없이 먼저 확보하고 그 후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확충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사에 대한 지원이다. 선진국으로 향해가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건비 지원액 뿐 아니라 지원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한데, 국, 공, 사립, 민간 관계 없이 국가가 국, 공립과 같은 동일한 인건비 액수책정과 지원방식으로 기관이나 교사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 공립과 동일한 교원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해도 수업료 및 입학금과 함께 부모나 기관에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 사립 및 민간기관에서는 부모에게 받을 돈을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8. 교사의 근무여건개선 및 수급

국공립과 사립과 민간 모두 교원의 임금과 근무시간 동일하게하고 대체교사, 보

조교사 확보, 교사인력 풀제 등의 정책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오전에는 교육, 오후에는 보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한 학급당 정교사 2인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과 방학 중의 별도 정교사 배치 등은 차기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질적인 교사가 없이는 질적인 교육·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근무여건을 향상과 더불어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증의 일원화와 양성과정 및 현직교육에 대한 체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모쪼록 차기정부에서는 유보일원화체제 속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유아들의 질적인 삶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미, 이기섭, 정광진(2007).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5-19.
- 구은미(2007). 통학버스 안전운행 현황에 대한 연구-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31-439.
- 정병호, 정진경, 이부미(2003). 연구보고 2003-05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부.
- 조부경(2007). 우리나라 유아무상교육·보육 정책의 발전방향.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144-179.
- 조부경, 고영미(2006).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관련 문헌 및 인식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개편. **유아교육연구**, 26(4), 121-150.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 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토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최창한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보육시설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며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는 아동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육아정책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현재 산재하고 있는 영유아 안전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감한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어린이 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일한 연령의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불평등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급히 안전 관련 법규의 수준을 파악하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육시설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현재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유형이나 지정 유무에 따라 지원이 달라 보호자나 시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전문인력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차기정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시설에 대한 지원확충과 시설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아보육료의 동등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특수보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력pool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기회 확대

농어촌의 경우 특수한 지역상황과 여건(농한기/농번기)을 고려할 때 계절이나 시기에 따른 시간연장이나 시간제 보육의 요구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농한기에는 농어촌 지역 시설의 경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육아지원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5 가정 양육과 부모지원

취업모의 자녀 중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저조하고 개인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아 대상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취업모의 대리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0세아보육제도」는 보육정보센터장과 시설장이 가정보육교사를 0세아 가정에 파견 보육(1:1 등)하여 맞벌이가정 등 젊은 세대들의 보육문제 해결로 사회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 5년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가정도우미 제도와 달리 전문인력에게 보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0세아 전용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1:3으로 보육하는 0세아동을 1:2로 보육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가된 반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아의 발달 수준과 교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0세아 보육제도를 이용하는 보호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6 7 8 육아시설 : 체제 정비와 접근성 제고

현재 보육서비스의 당면한 문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을 적은 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낮은 보육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장, 교사, 보호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능력과 적절한

수준의 보육서비스, 생산비용의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비용 분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가격 규제 예외시설의 도입에 대해서는 계층 간의 빈부격차와 학부모의 요구에 의존한 보육과정의 파행운영으로 보육시설이 학원화 되어 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며, 가격규제를 받고 있는 일반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가격 규제 예외시설과 비교하여 높은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9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체계의 발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높이는 것보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인상을 통해 보육료 인상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며 계층 간 형평성 제고에도 효과적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아 기본보조금을 확대 실시하고 일본의 사례와 같이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보육시간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11, 12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보육시설장, 교사의 전문성이 증진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인증 후 세심한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 유지, 보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자칫 잘못하면 평가인증이 1회성에 그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해 평가인증을 참여해서 인증에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과 교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근로시간과 급여, 휴가 등에 대부분 못 미치고 있다. 대체교사 인력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고, 보육업무 외에 잡무(청소, 문서 등)처리 시간이 많아 업무량이 과중한 가운데 이에 따른 급여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마련하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국고지원시설의 급여 기준도 매우 낮은 편이다. 보육교사 급여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정부에서 일부지원을 하여 보육교사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대체인

력을 적절한 시기에 구할 수 없고 대체인력비 지원이 아예 없거나 현실적이지 못해 수급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체교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말처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점은 무엇
 입니까? 위의 <보기 1> 중에서 **바라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
 오. 보기 중 ⑬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
 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3-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다음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보기 2> 중에서 번호를 골라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기타를 선
 택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2

- | | |
|--------------------|--------------------------|
| ① 교육비·보육료 지원 | ②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
| ③ 유치원·보육시설 환경 개선 | ④ 원장(시설장)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
| ⑤ 정부의 유치원 장학 지도·관리 | ⑥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
| ⑦ 유치원 종일제 확대 | ⑧ 보육시설의 야간, 24시간 보육 등 확대 |
| ⑨ 기타() | |

2-1.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은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2>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순서
 대로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보기중 ⑨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
 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2-1.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중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2> 중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책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주십시오. 보기중 ⑨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 다음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1.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주변에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음
- ② 주변에 자녀를 맡길 믿을 만한 기관이 없어 힘들었음
- ③ 자녀 출산·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웠음
- ④ 직장에서 야근 등 초과근무가 잦아 힘들었음
- ⑤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어려워 힘들었음
- ⑥ 육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힘들었음
- ⑦ 기타()

3-2. 앞으로 정부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 지원
- ②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 ③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 파견 및 지원

- ④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원
- ⑤ 기관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⑥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의 적용 확대(휴직수당의 현실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 ⑦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탄력적 근무 적용 확대
- ⑧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방과후 활동 지원
- ⑨ 기타()

감 사 합 니 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전문가, 공무원, 원장, 교사)

1.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육아정책내용 예(例)>를 참고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1-1. 위의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다고(또는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정책별로 답해 주십시오.

2. 현재 시행 중인 유아교육 또는 보육 정책 중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다음 페이지의 <육아정책내용 예(例)>를 참고하여, 생각하시는 정책을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2-1. 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정책별로 답해 주십시오.

3. 유아교육 또는 보육 분야에서 향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안하고 싶으신 정책 과제를 모두 써주십시오.

3-1. 위의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 과제별로 답해 주십시오.

<육아정책내용 예(例)>

유치원·보육시설 운영지원정책

-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 시설)
- 사립유치원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 사립유치원·민간시설 교재·교구비지원
- 농어촌 공립유치원차량지원/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사업
-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지원
- 기타 보육(시간연장, 야간, 휴일, 24시간) 지원

교육비·보육료 지원정책

- 영아 기본보조금
-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 장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 두 자녀 이상 교육비·보육료 지원
-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유아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

- 보육시설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 국공립유치원·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보육시설 질 제고 정책

- 기관 질 관리 사업(평가인증, 장학 등)
- 교사 자격관리/보수교육 강화

가정내 육아 서비스 정책

- 영유아 돌보는 도우미 가정내 파견사업
- 여성농업인 가정 양육비 지원

